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엄준혀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엄준현



연구자료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인 쇄 2017년 10월 10일 발 행 2017년 10월 13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에스디워크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42-8 94320

978-89-322-2064-2 (세트)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 · 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 · 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 · 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 · 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 · 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 (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 · EU FTA는 물론한 · 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 · 미 FTA에 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 · EU FTA는 물론 한 · 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 미 FTA 유형, 한 · 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 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 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 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 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 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 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 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 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 · 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 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 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 · 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 · EU FTA의 엄격한 '필 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 · 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 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 · 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 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 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 파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 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 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 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 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 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 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

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 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 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 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 다가 CETA는 기존 한 · 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 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 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 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한 인도, 한 · 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1
가. 연구의 목적	21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	22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 2	26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	26
가. 개관 ·····	26
나. 주요 내용	31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	45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46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54
3. 소결 ······ (62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 (62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	64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66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66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	67
가. 한·싱가포르 FTA ······	67
나. 한·EFTA FTA ·····	70
다. 한·ASEAN FTA ·····	72
라. 한 · 인도 FTA ·····	74
마. 한·EU FTA ·····	81
바. 한 · 페루 FTA ·····	86
사. 한·미 FTA ······	87
아. 한·터키 FTA ······	89
자. 한·호주 FTA ······	91
차. 한 · 캐나다 FTA ······	92
카. 한·중 FTA ······	93
타. 한 · 베트남 FTA ·····	94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	95
가. TPP ·····	95
나. CETA ·····	96
4. 소결	99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101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 1	101
가. 배경]	101
나. 당사자들의 주장	101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102
라. 시사점]	103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	105
가. 배경	105
나. 당사자들의 주장	107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110
라. 시사점	11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7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117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	118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119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	120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	122
참고문헌	124
Executive Summary	131

K

표 차례

丑 1-1.	금융서비스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23
丑 2-1.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 ·····	29
丑 2-2.	금융서비스 규정의 조항별 분류	30
丑 2-3.	TPP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구성 ·····	49
丑 2-4.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구성 ······	56
丑 3-1.	한 · 싱가포르 FTA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69
丑 3-2.	한 · EFTA와 한 · 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71
丑 3-3.	한 · ASEAN, GATS, 한 · EU FTA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73
丑 3-4.	한 · 인도 FTA와 GATS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75
丑 3-5.	한 · 인도, 한 · ASEAN, 한 · EU FTA 및 GATS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77
丑 3-6.	한 · EU FTA와 한 · 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85
丑 3-7.	한ㆍ페루와 한ㆍ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86
丑 3-8.	한 · 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88
丑 3-9.	한ㆍ터키와 한ㆍ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89
丑 3-10.	한·호주와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91
丑 3-11.	한ㆍ캐나다와 한ㆍ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92
丑 3-12.	한 · 중과 한 · 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	93
丑 3-13.	한ㆍ베트남과 한ㆍ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94
丑 3-14.	한 · 미 FTA와 TPP의 건전성 사유 예시 비교	96
丑 3-15.	한ㆍ미 FTA와 CETA 협정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98
丑 4-1.	NAFTA와 한 · 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1	04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종류 ·	. 19
글상자 4-1.	아르헨티나의 조치 내용	106
극사자 4-2	CATS 글유서비스부소서 제2조 가히 버역보	11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1) 금융서비스 산업의 의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1) 금융선진 국은 금융서비스가 고용과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크다. 영국은 금융서비스산업의 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 미만이고 게다가 감소 추세에 있다. 2)

선진국일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 특히 이른바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많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은 금융권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약 70만 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그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이것은 상품 공급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와 종국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

¹⁾ 법무부(2000), p. 250.

^{2) 「}금융산업에 '메기'를 더 풀어놔야」(2017. 8.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29).

^{3) 「&#}x27;일자리 모범생' 금융, 홀대론이 웬말」(2017. 6.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4).

환위기(1997년), 신용카드 사태(2003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가 있었으며, 2008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서비스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금융서비스 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는 이른바 '규제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거론된다.

2) 금융서비스 협상 연혁

금융서비스 산업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규제가 많은 산업인 까닭에 국제적인 협상에서도 일찍부터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고 이 것은 WTO 출범의 기초가 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 협상, Uruguay Round Negotiation)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치열한 의견 대립 속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또는 금융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UR 협상이 1993년에 타결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이었다.

금융서비스 협상 참여국들은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아, 1995년에 금융서비스 협상이 재개되었다. 1995년 협상에서는 서비스 자유화 양허 수준을 더 높이거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의 면제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협상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한 협상 참여국들은 2년 후인 1997년에 다시 협상을 개시하여 미국, 인도, 태국이 자국의 광범위한 MFN 면제 리스트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에는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한 GATS 제19조에 따라 서비스협상이 개시되었고, 서비스협상은 2001년 11월 DDA 협상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서비스협상의 목표가 각료선언 부속서 C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는 듯하였으나, 2006년 이후 협상은 정체된 상태이다.

2001년에 개시된 WTO 차원의 DDA 협상이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정

체되자, 미국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선진국들은 서비스, 환경상품 등 각 분야별로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을 추진하는 한편, 높은 규범의들에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대 경제권 사이의 또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이른바 메가 FTA(Mega FTA) 협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미국 트럼프 후보가 2016년 말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러자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의 다음 회의 일정을 취소시켰다. 의미국의 트럼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1월 23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5) 2017년 1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체약국들에게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 통보하였다. 이 또한 미국은 TTIP 협상에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어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상도 중단된 상태이다. 기현재 미국은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간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각국과의 개별적인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8)

3) 금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는 일반적으로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

^{4) &}quot;EU's Call to U.S. to Restart Talks on Services Goes Unanswered"(2017. 6. 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7. 8. 14).

^{5) 「}트럼프, 위험한 보호무역 질주…업무 첫날 TPP탈퇴 서명」(2017.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15).

^{6) 「}미국 무역대표부, TPP 참가국에 공식 탈퇴 통보」(2017.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15).

^{7) &}quot;EU's Call to U.S. to Restart Talks on Services Goes Unanswered" (2017. 6. 1).

^{8) 「}美USTR 대표 "TPP 탈퇴번복 없다···아태국가와 FTA 원해"」(2017.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15).

(any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로 정의된다.》 그런데 정작 '금융적 성격'이 과연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의 부속서 1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부속되어 GATS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¹⁰⁾ 금융서비스에 관한부속서(WTO 금융서비스협정, Annex on Financial Services)도,¹¹⁾ EU와 캐나다 사이의 양자간 FTA인 CETA(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도,¹²⁾ TPP와 같은 이른바 메가(Mega) FTA도 마찬가지이다.¹³⁾

WTO 협정이나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GATS에도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GATS도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지 않는데, 14) 그 이유는 UR 협상 참여국들이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때문이다. 이후 EC-바나나 사건(사건번호: DS27)과 캐나다-자동차 사건(사건번호: DS139)과 같은 WTO 분쟁에서 상소기구들도 서비스의 개념 그 자체에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서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 판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1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ATS에 부속된 WTO 금융서비스협정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정의가 없는 이유도 GATS에서

⁹⁾ 한 · 미 FTA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20조(정의) 및 한 · 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 거래) 제5관(금융서비스)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¹⁰⁾ GATS 제29조(부속서).

¹¹⁾ Annex on Financial Services para 5 lit a.

¹²⁾ CETA Article 13.1(Definitions).

¹³⁾ TPP Article 11.1(Definitions).

¹⁴⁾ Zacharias(2008), p. 38.

¹⁵⁾ 법무부(2000), p. 124. 참고로 WTO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에도 상품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의 예와 마찬가지로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협상 당사국이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FTA 당사국의 입장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포함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 그리고 보험이 제외된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가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도 마찬가지이고, 16) WTO 금융서비스협정도 다르지 않다. 17)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지 않고 금융에 포함되는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금융에 대해 직접 입법적 정의를 내리는 국내 법률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18)

글상자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17, 2014, 5, 21〉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¹⁶⁾ 한 · 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5관(금융서비스)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¹⁷⁾ Annex on Financial Services para 5 lit a.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finance)'의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참고해 보면,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금융(金融)'의 사전적 의 미는 '금전을 융통하는 것,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로 풀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한편 영어사전에서는 'finance'의 사 전적 의미가 '자금의 순환과 신용의 부여 등을 포함하는 체제'로 정의된다.20)

나. 연구의 필요성

미국이 2017년 3월 31일 공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7년 NTE 보고서,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그리고 도매유통업 분야와 더불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3대 분야에 속한다. 21)

미국은 2017년 NTE 보고서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 그리고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 미국은 한 · 미 FTA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이전 규정을 2013년에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미국금융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이 강력하여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현재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미국은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브랜드가 아닌 국내 브랜드 카드를

¹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검색일: 2017. 6. 18).

²⁰⁾ Finance: the system that includes the circulation of money, the granting of credit, the making of investments, and the provision of banking facilities, 메리암-웹스터(Merriam-Webster) 온라인 사전(검색일: 2017. 6. 18).

²¹⁾ USTR(2017a), p. 275(검색일: 2017. 6. 18).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22) 국내 카드사들이 고율의 브랜드 수수료가 있는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의 국내외겸용카드를 발급해 오다가, 2014년부터 주요 카드사가 국내 사용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국내외겸용카드를 다수 출시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23)

이처럼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통상 장벽이라고 미국이 지적한 사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에 대한 불만에 해당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에 초점을 둔 이유 중하나이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와 주요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새로운 조항이 있거나 더 상세히 또는 더 체계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베스트 FTA(Best FTA)'라고 불리는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에서 주요 조항들을 정리하고 최근의 협상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규정의여러 조항 중에서도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이하 '건전성 조치 조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조항 자체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건전성 조치 조항 문언의 변화와 금융서비스 규정의 전체 체계 속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이 갖는 체계

²²⁾ Ibid., p. 282(검색일: 2017. 6. 18).

^{23) 「}비자카드 해외사용 카드 수수료 인상····소비자 부담 가증될 듯」(2017.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6. 16).

적인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관련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유형의 조치들이 건전성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우리나라가 체결해온 FTA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보고 서가 국내에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연구가 국민이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 비스 규정에 대해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지지를 이끌어내 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F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는 서비스나 투자 등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다. 한철수(1994)는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다만 WTO 차원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와 관련된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는 거리가 있다. 법무부(2010)의 경우 GATS에 대해조항별로 해설한 유익한 연구이나 GATS 전반을 다루다 보니 금융서비스 규정에할애된 분량이 제한적이어서 깊이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Munin(2010)도 GATS 전반에 대해설명과 논평을 하였는데 법무부(2010)와마찬가지로 전반을 다루다보니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량이할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논평은 본 연구에서 많은 도움이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연구들은 FTA보다는 WTO 차원의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머물렀고, 서비스 분야 전반을 다룬 까닭에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다루지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건전

성 조치(prudence measure)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비차별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로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WTO 차원에서 GATS 규범을 검토한 것이 많아 F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희소한 것으로 보인다. 채은선(2012)은 비로소 금융서비스 규제에 집중한 연구였다. 특히 건전성 규제의 개념과 건전성 조치 조항의 협상 경과에 대한 내용이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IMF 또는 바젤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 또는 조직과 WTO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의 주된 범위인 FTA 금융서비스 규정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끝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기술발전이 금융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편(2015)은 지급결제, 해외송금, 클라우드 펀드,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의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FTA 금융서비스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다만 정보처리의 국외위탁 부분에서 한 · 미 FTA 금융서비스 규정이 다루어졌다. 한편 Mitchell, Hawkins, and Mishra(2016)는 WTO 분쟁해결에서 금융건전성 조치가 최초로 제기된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2015년에 회람된 WTO 패널 판정만을 다루었고 2016년에 회람된 상소기구의 판정은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상소기구의 판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표 1-1. 금융서비스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연구자	연구내용					
한철수(1994)	· WTO 서비스무역 분야 협상의 전반적인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서술 ·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협상 경과도 간략히 다룸.					
법무부(2000)	· GATS 전반에 대한 해설 ·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대한 해설이 일부 포함됨.					
Munin(2010)	· GATS 조항별 간략 해설 및 논평 ·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다루었음.					

표 1-1. 계속

연구자	연구내용
채은선(2012)	· 금융건전성 조치의 개념 정리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소개 및 WTO 협정과의 관계 검토
고학수 편(2015)	· 핀테크 관련 국내법적 쟁점에 대해 서술 · 정보처리의 국외위탁과 관련하여 FTA 관련 내용이 다루어짐.
Mitchell, Hawkins, and Neha Mishra(2016)	· WTO 패널 판정례 분석 · ICSID 중재판정례 검토 · 주요 FTA에서의 건전성 조치 관련 조항을 간략 소개

자료: 한철수(1994); 법무부(2000); Munin(2010); 채은선(2012); 고학수 편(2015); Mitchell, Hawkins, and Neha Mishra(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은 FTA에서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통상법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라는 점이다. FTA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초기에 주로 WTO GATS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국제법(국제경제법)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기술 발전이 금융 관련 국내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룬 최근의 연구와도 구별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자국 FTA의 연결망을 확장하기 위해 숨 가쁘게 경쟁해왔으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기존의 FTA 추진 정책에 대해 반성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새로운 FTA의 체결이 정부의성과물로 홍보되고 국가 전체의 수출액 증가 또는 특정 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익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에서, 점차 일반 서민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FTA를 통해 추구하려는 국익의 정의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맥락의 공약을 제시한 트럼프 후보가 2016년 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7년 취임 초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정책이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도 앞으로는 전보다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

개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비교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최근 협상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금융서비스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하나의장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룬다. 더불어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와 분쟁 사례들을 다룬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1) 규정 현황

이번 장에서는 FTA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의 FTA들을 살펴본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FTA로는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 전체와 NAFTA, TPP, CETA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를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FTA 중에서 NAFTA, TPP, CETA를 선정한 이유는 금융서비스 규정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국인 미국과 EU의 FTA 중의미가 큰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개관에서 NAFTA와 TPP는 미국의 FTA 금융서비스 규정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선정되었다. TPP는 지금은 미국이 탈퇴하기는 하였지만 최근까지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NAFTA는 비록 과거에 체결된 FTA이지만 최근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서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의 결과 변화될 내용은 앞으로의 한 · 미 FTA 개정협상, 한 · 캐 FTA 개정협상, 또는 한 · 멕 FTA 신규협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CETA 역시 EU는 물론 캐나다의 FTA 정책 방향도 엿볼 수 있는 최근의 FTA라는 이유에서 선정되었다.

물론 아무리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우리나라 FTA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 전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국의 FTA에 대한 검토와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 중에는 미국, EU와 각각 체결한 FTA도 있다. 한·미, 한·EU FTA는 각각 미국, EU가 체결한 FTA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와 최근에 체결한 의미 있는 FTA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 연구의 개관에서 우리나라의 FTA가 주요국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FTA 금융서비스 규정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적용범위, 정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국경간 서비스무역, 고위경영진 및이사회, 국내규제, 특정정보의 취급, 예외, 신금융서비스, 건전성 조치 예외, 자율규제기구,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금융정보의 국외이전, 후선업무기능의위임, 투명성, 지급 및 청산제도, 인정, 단기세이프가드, 협의, 분쟁해결, 금융서비스위원회 이상 23개 조항이 식별된다. 물론 FTA마다 금융서비스 규정의수에는 차이가 있으며, 조항의 내용을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파악하는지에 따라 조항의 수에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별된 조항의 수는고정된 것은 아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FT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에 발효시킨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발효시켰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콜롬비아와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총 15개의 기발효 FTA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한・중미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2017년 3월 가서명을 마쳤고 이스라엘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15개 기발효 FTA 중에서 한 · 칠레, 한 · 콜롬비아, 한 · 뉴질랜 드 FTA를 제외한 12개 FTA에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 · 칠레 FTA²⁴)와 한 · 콜롬비아 FTA²⁵)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4년 후에, 한 · 뉴질랜

드 FTA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실현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26) 더불어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FTA라고 하더라도 모두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둔 것은 아니다. 한·ASEAN, 한·인도, 한·터키, 한·베트남 FTA는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 부속서의 형태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발효 FTA 중에서는 한 · 미 FTA가 조사대상 23개 조항 중 22개 조항을 규정하여 가장 많은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 · 호주 FTA와 한 · 캐나다 FTA가 각각 21개와 20개의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들 FTA에는 한 · 미 FTA에 있는 후선업무기능위임과 단기세이프가드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한편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발효 FTA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조항을 포함한 FTA는 한 · ASEAN FTA로 8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FTA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현행 NAFTA에도 14개의 조항이 있어 체결 연도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 미 FTA나 TPP에 비해서는 금융정보의 국외이전,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와 같은 조항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 미 FTA와 TPP는 적어도 조항의 유무만 형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 미 FTA의 수준이 TPP에 비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TPP에 없는 조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한 · EU FTA와 CETA가 해당되는데, 한 · EU FTA에 규정된 조항의 수가 CETA와 상당한 차이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²⁴⁾ 한 · 콜롬비아 FTA 제9.12조.

²⁵⁾ 한 · 칠레 FTA 제21.5조.

²⁶⁾ 한 · 뉴질랜드 FTA 제8.16조.

弘 표 2-1.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FTA 명칭	양 닮	<u>이</u>	왕 왕	^첫 숙	첫 뭤	국경간 格미스 무역	생용 교 교 이 사 교	과제	일 상 다 스 다 스 다	정	심공용	건전성	장 카페 그	물 물 상 상 상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상장路	장마유망	마 공0 국0	먑빡絷	정	<u>당기</u> 세이田 기지	<u>回</u>	하 연 등	금융 서비스 위원회
	한·칠레 ¹⁾											١.												
2	한 - 싱가포르	0	0	0		0			0	0	0		0					0		0		0	0	0
m	한·EFTA	0	0	0	0	0			0				0					0		0			0	0
	한·ASEAN	0	0						0		0		0							0	0		0	
	한 인도	0	0						0	0		0	0					0		0			0	
9	한·EU	0	0								0	0	0	0		0		0	0	0			0	
	한·페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한·미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한·터키	0	0									0	0	0		0		0	0	0			0	
10	한·호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한·캐나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한·중국	0	0	0		0				0			0					0	0					
13	한·뉴질랜드 ²⁾																							
14	한·베트라	0	0								0		0			0		0	0	0			0	0
15	한 · 콜롬비아 ³⁾																							
16	NAF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TP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CE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한 · 칠레 FTA 제21.5조금융서비스에 관한 작업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지 4년 후에 회동하여 금융서비스를 이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의 실행가능성 및 편의성에 관해 논의한다.
) 한 · 뉴질랜드 FTA 제8.16조(금융서비스 작업 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실현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 한 · 콜롬비아 FTA 제9.12조(금융서비스 작업 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4년 후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위 표에 언급된 18개 FTA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 (一: (十 7

ත

뿊

2) 조항에 대한 분류

앞서 식별된 23개 조항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금융'서비스'도 서비스의 한 종류이므로 서비스라는 특성에서 유래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규정과 유사한 조항들이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국경간서비스무역,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내규제, 투명성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금융'서비스라는 고유한 특성에서 유래하는 금융서비스 규정 만의 특징적인 조항들이다. 적용범위, 정의, 일정 정보의 취급, 신금융서비스, 건전성 조치 예외, 자율규제기구, 후선업무기능위임, 금융정보해외이전, 포트 폴리오 운용서비스, 분쟁해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금융서비스위원회이상 12개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분쟁해결은 외견상 일반적인서비스규정과 동일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용상 금융서비스만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되었다.

	표 2-2. 금융서비스 규정의 3	조항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부 조항의 명칭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3	시장접근
	일반적인 서비스규정과 유사한 조항	4	국경간서비스무역
	글린역한 시마스파영퍼 규칙한 요형	5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6	국내규제
금융서비스		7	투명성
규정		8	단기세이프가드
		1	적용범위
		2	정의
	금융서비스 규정만의 특징적인 조항들	3	일정 정보의 취급
	ㅁ용시비= που의 국경적인 포잉글	4	신금융서비스
		5	건전성조치 예외
		6	자율규제기구

표 2-2. 계

대분류	소분류		세부 조항의 명칭
		7	후선업무기능의 위임
		8	금융정보의 국외이전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규정만의 특징적인 조항들	9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규정	금융시미스 규정한의 극정적인 조앙을	10	분쟁해결
		11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2	금융서비스 위원회

자료: FTA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이러한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규정만의 특징적인 조항에 집중하여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건전성 조치 예외에 관한 조항은 이 장에서는 다른 조항과 더불어 간략히 다루되, 뒤에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적용대상이 아닌 조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이나 특별히 허용되는 조치에 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해 한 · 미 FTA는 1)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2)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3)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각각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한 · EU FTA는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5관(금융서비스)의 금융서비스 규정은 제2절(국경간 서비스 공급), 제3절(설립), 제4절(자연인의 상용일시 주재)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원칙이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한 \cdot 중 FTA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만 규정하는 등 협정마다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ㆍ미FTA, 한ㆍ중 FTA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이나 특별히 허용되는 조치로는 한 · 미 FTA에서 '공 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당 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다. 한 · EU FTA에는 한 · 미 FTA에서 규정한 두 가지에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혹 은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

끝으로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과 다른 장, 특히 투자에 관한 장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장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 · 미 FTA의 경우 투자에 관한 장(제11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incorporated)되는 한도에서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도 적용된다.27) 그런데 한 · 미 FTA 제11장(투자) 제2절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s settlement)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ISDS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한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를 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ISDS를 활용하여 투자유치국과다툴 수 있다.28) 다만 한 · 미 FTA는 이때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를 수용 및 보

²⁷⁾ 한 · 미 FTA 제13.1조(적용범위) 제2항 가호.

²⁸⁾ 정민정(2011), p. 571.

상(제11.6조), 송금(제11.7조), 투자와 환경(제11.10조), 혜택의 부인(제 11.11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제11.13조), 혜택의 부인(제12.11조)으로 한 정하고 있다. 29)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 투자에 관한 장의 적용 그리고 그 결과 ISDS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용은 한 · EU FTA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다. EU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의 발 효로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 권한을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넘겨받았 다.30) 때문에 그 이전인 2009년 10월에 이미 가서명이 이루어진 한 · EU FTA 는 투자를 정면으로 다루는 장 없이 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제7장)의 한 부분인 설립에 관한 절에서 이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투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제도로 평가 받는 ISDS는 규정되어 있지 않 다. 다만 앞으로 투자와 관련된 협상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게 부여되는 경우 검토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한 · EU FTA에 반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31)을 두고 있을 뿐이다. 32)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 EU FTA 개정협상에 임하게 될 때에 한 · 미 FTA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되는 한도에서 투자에 관한 장을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인지 ISDS 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EU는 2015년 9월 16일 ISDS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상설적인 투자법원 설립 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33) 앞으로 EU와의 한 · EU 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EU의 제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EU의 제안 이후 EU 및 EU의 협상 상대국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²⁹⁾ 한 · 미 FTA 제13.1조(적용범위) 제2항 나호.

³⁰⁾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EU 기능협정) 제207조.

³¹⁾ 한 · EU FTA 제7.16조(투자의 법적 틀의 검토).

³²⁾ 외교통상부(2012), p. 108.

³³⁾ 이재민(2016), pp. 70~71.

2) 정의

정의 조항은 말 그대로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여 둔 것이다. 정의 조항은 금융서비스 협정의 적용 여부 또는 그 적용범위의 넓고 좁음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들은 정의 규정에서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 공공기관에 대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한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한 · 미FTA에서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 한 · 중 FTA에서는 조치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두는 등 FTA마다의 특징도 발견된다.

정의 조항의 중요성을 금융서비스 정의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먼저 한 · EU FTA는 "금융서비스란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금융서비스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라는 두 가지 큰 유형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들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시 목록을 제공한다. 34

반면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 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35)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미 FTA가 예시적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한·EU FTA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 · 미 FTA가 한 · EU FTA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서 언급된 두 가지 큰 활동 유형 이외에,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 (services incidental or auxiliary to a service of a financial nature)'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다만 한 · 미 FTA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

³⁴⁾ 한 · 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5절(규제의 틀) 제5관(금융서비스) 제7.37조 (적용범위 및 정의).

³⁵⁾ 한 · 미 FTA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20조(정의).

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시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침묵한다. 때문에 한 · EU FTA에 이러한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한 · EU FTA와 한 · 미 FTA 모두 제시된 목록의 활동들을 '포함 (include)'한다고 하였으므로 목록의 성격이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임이 분명하고 그 범위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넓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 · 미 FTA에만 있는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서비스'라는 문언으로 한 · 미 FTA에서 금융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서비스의 유형이 한 · EU FTA에서 보다 넓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문제가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 즉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면, 금융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금융서비스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거래를 촉진하더라도 그 본질은 금융적 성격이 아닌 기술적 성격이라고 보 아 금융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 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FTA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정의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일정 정보의 취급

일정 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은 FTA 당사국이 일정 정보를 (i) 제공하거나, 일정 정보에 (ii) 접근할 것을 허용하도록 FTA에 의해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36)

³⁶⁾ Ibid., 제13.7조(일정 정보의 취급).

무엇이 일정 정보인지 정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유형을 FTA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제시된 일정 정보의 예는 (i) 개인 금융고객의 거래 및 계정 정보 (ii) 공공기관의 비밀정보 (iii)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이상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EFTA FTA의 경우 (ii)와 (iii)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미 FTA와 한·중 FTA는 세 가지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언급된 FTA에서도 유형들은 구체적 문언이 조금씩 다 르고 서술 체계도 달라 각각의 유형이 포괄하는 범위가 과연 동일한 것일지 의 문이 들게 한다. 먼저 한·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 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비밀표지만 갖추면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미 FTA 의 규정 체계는 구체적 위험성을 요구한다는 추정을 더욱 강화시킨다. 즉 한ㆍ 미 FTA는 일정 정보의 취급이라는 제목 아래에 2개의 항을 두고. 개인 고객의 금융정보를 가호에, 그리고 공공정보 및 기업의 상업적 비밀정보를 나호에 규 정하는데, 공공정보와 기업의 상업적 비밀정보는 일견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 런데도 이러한 분류를 택한 것은 개인의 금융정보는 추상적 침해의 발생으로 바로 위반을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반면 공공정보와 기업의 상업적 비밀정보는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있어야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하겠 다는 의사가 조문 체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라는 셋째 유형도 한 · 미 FTA는 '기업(enterprise)'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commercial interest)'을 저해할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반면, 한 · 중 FTA에서는 단지 '재산적 정보'(proprietary)라고만 되어 있어 기

업이 아닌 개인의 재산적 정보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일정 정보의 취급이라는 하나의 조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FTA에서 일정 정보에는 이러 이러한 유형이 '포함된다 (included)'고 규정하기 때문에 예시된 것 이외의 유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조 자체가 결정적인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툼이 되는 유형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면 관련 분쟁에서 논란이 더 적을 것이고 보다 수월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예시 유형의 다소와 누락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4)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상대방 당사 국의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는데, 제공 방법이 새롭거나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다. 37) 양 당사국 중 한 당사국에서는 제공 되는 금융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양 당 사국의 영역 그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규 정에서 말하는 신금융서비스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특히 한 · 미 FTA에서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어느 당사국에서도 공급되 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가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하지만 신금 융서비스에 관한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8)

신금용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문은 신금용서비스 공급을 위한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규 정하면서 허용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음으로 제2문은 앞서 제1문에 규

³⁷⁾ Ibid., 제13.20조(정의) 및 한 · EU FTA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한 · 미 FTA와 한 · EU FTA에 서의 신금융서비스 정의는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만 공급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공방법과 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표현에 차이가 있음.

³⁸⁾ Ibid., 제13.6조(신금융서비스) 각주 2.

정된 허용할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그리고 제3문은 이러한 예외에 대한 예외를 각각 규정한다.

먼저 제1문이 규정하는 의무의 내용은 (i)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ii) 동종 상황에서 (iii)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었을 신금융서비스를, 상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39) 제1문에 기재된 구성요건을 하나씩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불필요한 주체는 신금용서비스 공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 당사국이다. 근거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신금융서비스의 인가 신청이 문제되는 상황은 허용될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지만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둘째, 동종 상황에 대해서는 FTA에 정의가 없다. 서비스 무역에서 동종 상황은 상품 무역에서 동종 상품의 개념만큼이나 중요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개념이다. WTO 분쟁사례도 대부분은 상품무역에 관한 것이고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분쟁사례는 극히 일부만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분쟁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다루게 되는 분쟁해결의 소극적 성격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동종 서비스가 일부 측면에서라도문제가 된 WTO 분쟁사례로는 캐나다-자동차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하게 현지주재(모드 3)를 통해 설립되었지만 캐나다 내에 생산설비가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두 서비스 공급자 및 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동종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WTO 분쟁 패널은 두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운영상 차이와 무관하게 이들을 동종 서비스 공급자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지 않는 다른 영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

³⁹⁾ *Ibid.*, 제13.6조(신금융서비스) 제1문 및 한 · EU FTA 제7.42조(신금융서비스) 제1문.

다. 40) 이러한 판정례가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난관이 더 있는데, 그것은 WTO 협정에서는 '동종 서비스와 동종 서비스 공급자'라고 규정한 반면,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종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NAFTA 분쟁인 Methanex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패널은 NAFTA 투자에 관한 장이 WTO 협정과는 다른 동종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협정당사자국들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WTO와 다른 독자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Pope & Talbot v. Canada 사건에서는 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법리를 받아들여 판정을 하는 등 아직은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앞으로 판정례의 축적을 통해 구체화해 나아가야 할 개념일 것이다. 41)

셋째,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신청에 대해 당사국이 모두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었더라면, 허용했었을' 금융서비스만을 허용할 수 있다. 즉 가정적 판단을 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당사국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그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당사국이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가정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ii) 동종 상황인 경우 가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FTA가 WTO 협정과 같이 '동종 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동종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판단의 기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정책결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허용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제2문은 다만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금융서비스는 국경간 서비스

⁴⁰⁾ WTO(2000), paras 10.247-10.248.

⁴¹⁾ 법무부(2010), pp. 132~134.

공급(모드 1) 무역의 형태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 즉 상업적 주재(모드 3)의 형태로만 허용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발효 FTA에서도 일반적이다. 하지만 FTA별로 이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42)

끝으로 제3문은 허용 의무에 대한 예외의 예외로서, 제1문에 규정된 허용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제2문에 인가를 요구하더라도, 그 예외의 예외로서 제3문은 인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할 것과, 인가의 결정은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5) 자율규제기구

자율규제기구는 법령 또는 정부의 위임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협회 등과 같은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43)

자율규제기구에 관한 조항은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4)

비정부 기관의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특정 의무가 준수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근거는 이 비정부 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 행사가 당사국의 통제, 즉 법령 또는 정부의 위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⁴²⁾ 한 · EU FTA 제7.42조(신금용서비스) 제1문은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허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청요건에 설립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반면 한 · 미 FTA 제13.6조(신금융서비스) 제1문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형태로 신금융서비스 공급이 불허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세 설명 자료에서 그렇게 설명할 뿐이다.

⁴³⁾ 한 · 미 FTA 제13.20조(정의).

⁴⁴⁾ Ibid., 제13.12조(자율규제기구).

6) 후선업무기능의 위임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가 아닌 데이터 처리, 인력관리, 회계 기능, 법률 기능 등을 의미한다.45)

후선업무기능의 위임에 관한 조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 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후 선업무)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여기에는 '실 행 가능한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다.46) 또한 당사국의 영역 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 가능한 요 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47)

한편 데이터 처리라는 기능의 위임은 그 내용이 되는 데이터, 즉 정보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라는 기능의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여 정보의 이전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 · 미 FTA도 이점에 대해 각주로서 명확히 하였다. 48) 정보의 이전은 후술할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7) 금융정보의 국외이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은 제목 그대로 금융정보를 한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는 이전의 목적이 요구되는데, 앞서 언급 한 금융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즉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49)

FTA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2013년 「금 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50)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⁴⁵⁾ Ibid.,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3절(기능의 수행) 제1항 가호 내지 바호.

⁴⁶⁾ Ibid., 제1항.

⁴⁷⁾ Ibid., 제3항.

⁴⁸⁾ *Ibid.*, 제1항 나호 각주 16.

⁴⁹⁾ Ibid., 제2절(정보의 이전) 및 한 · EU FTA 제7.43조(자료처리).

^{50)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3. 6.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17호, 2013. 6. 25. 제정).

후 미국이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승인요건도 까다롭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현안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5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51)을 개정하여 미국 측이 어려움을 제기하던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의 국외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제한도폐지하였다. 이로써 미국도 특별히 문제를 더 제기하지 않고 있어 양국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52)

8)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포트폴리오(portfolio)는 하나의 자산이 아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대상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말로서 해당경제주체가 보유한 자산들의 구성을 의미한다.53)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사국이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신탁서비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 및 실행서비스는 여기서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4) 한 · 미 FTA는 여기에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을 것과 등록을 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55)

한·미 FTA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5%「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

^{5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7호, 2015. 7. 22. 일부개정).

⁵²⁾ USTR(2017a), p. 282.

⁵³⁾ NEW 경제용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3157&cid=42111&cate goryId=42111(검색일: 2017, 8, 2)

⁵⁴⁾ 한 · 미 FTA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1절(포트폴리오 운영) 제1항 및 제4항.

⁵⁵⁾ *Ibid.*, 제5항.

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8635호)이 2009년 2월 시행되면서 폐지, 대체되었다.57)

9) 금융서비스에서의 분쟁해결

금융서비스에서의 분쟁해결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쟁의 종류는 국가 사이의 분쟁에 해당한다. 금융서비스 패널을 구성하는 위원은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58) 더불어 패널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한 · 미 FTA의 특징이다. 구체적인 제정은 한 · 미 FTA는 공동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9) 한 · EU FTA에는 일반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의 한 부분인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행동규범)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60) 한 · EU FTA에서 아직 중재인 신분이 아닌, 중재인으로 선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과정에 있는 자도 중재인 명부에 있기만 하면 이해상충을 피해야 하는 등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61) 중재인의 자격과공정성 유지는 중재판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보장되지않을 때 중재판정의 불이행과 중재인의 부패를 원인으로 하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등으로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여기서 투자분쟁이라 함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앞서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⁵⁶⁾ Ibid., 제6항.

⁵⁷⁾ Ibid., 제1항 및 제4항.

⁵⁸⁾ Ibid., 제13.18조(분쟁해결) 제3항 가호 및 한 · EU FTA 제7.45조(분쟁해결) 제2항.

⁵⁹⁾ 한 · 미 FTA 제13.18조(분쟁해결) 제3항 라호.

⁶⁰⁾ 한 · EU FTA 제7.45조(분쟁해결) 제2항.

⁶¹⁾ *Ibid.*,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조(정의) 및 제2조(절차에 대한 책임).

관한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FTA는,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를 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과 다툴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예외에 기초한 항변의 인정 여부를 패널이 아닌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다. 즉 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표방하면서도 일정한 예외에 대해서는 당사국 사이에서 대안적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 미 FTA의 예를 보면, 피청구국은 예외에 기초한 항변을 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공동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62)

여기서 항변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미리 예외에 관한 조항에 명시된 것에 한정되는데, 한 · 미 FTA의 경우 건전성 사유를 위해 취한 조치,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취한 비차별적 조치,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를 포함한 법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및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예외에 해당한다.63)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결정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64)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법의 지배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결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투자자의 모국이투자자와 이해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규제 당국이라는 공통의 배경에서 피소국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투자자의 모국이 의견의 합치를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결정이 개입되는 절차는 온건하게 평가하자면 대안적 분쟁해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중재판정의 본질이 규범에 기초한 해결 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후퇴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더 가혹하게 금융서비

⁶²⁾ 한 · 미 FTA 제13.19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1항 가호.

⁶³⁾ Ibid., 제13.10조(예외) 제1항 내지 제4항.

⁶⁴⁾ Ibid., 제13.19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1항 다호.

스위원회의 결정을 정치적 해결로 평가하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투자자의 모 국이 일부 제약하고 정치적 해결을 법적 해결 보다 앞세운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유한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정하는 것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11) 금융서비스 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위원회는,65) 한 · 미 FTA의 경우 매년 또는 합의된 기간마다 회합하고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66)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기능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과 그 구체화에 대한 감독,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의 검토, 그리고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참여이다. 67)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둔 FTA들은 투자분쟁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관여 부분에서 FTA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지금부터는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본 연구가 FTA 협정문에 대한 문언 분석을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협상 동향은 최근에 협상이 타결되어 공개된 FTA의 협정문 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수많은 FTA 중에서도 규범적으로 자세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FTA에 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

⁶⁵⁾ Ibid., 제13.16조(금융서비스위원회) 제1항.

⁶⁶⁾ Ibid., 제3항.

⁶⁷⁾ Ibid., 제2항.

할 때 협상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협정문이 공개되어 있고 또 살펴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규범의 수준이 높은 FTA는 TPP와 CETA뿐이다.

나머지 FTA들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TTIP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협정문의 경우 통합협상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중단되어 EU의일방적 입장이 포함된 제안서만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TiSA의 경우 그 성격이 FTA가 아닌 분야별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인데다가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중단되어 역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에 타결된 일·EU FTA 역시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NAFTA 재협상도 미국의 방침 정도만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8) 협정문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 추진 경과

TPP는 이른바 'P4(Pacific 4)'로 불리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가 2004년에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한 것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이후 2010년에는 기존 4개 이외에 호주, 페루, 미국, 베트남, 이상 4개국이 새롭게 참여하여 총 8개국이 참여하여 호주에서 제1차 TPP 협상이 개최 되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9번째 참여국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2013년에는 일본이 12번째로 참여하면서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FTA로 부상하였다.69)

TPP 협상은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각료회

⁶⁸⁾ USTR(2017b), p. 8.

⁶⁹⁾ Schott(2016), Cimino-Isaacs and Schott eds., p. 10.

의에서 마침내 타결되었다.70) 협상 참여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 끝에, 관세의 경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적으로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71)

그런데 2017년 1월 2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공식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의 무역 협상에서 개별 국가들과 1대1의 기초 위에서 직접 협상할 것을 천명했다.72)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첫 TPP 각료회의가 2017년 3월 15일 칠레에서 열렸으나 TPP 체결당사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채 TPP를 발효시킬지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을 뺀 11개국만으로 TPP를 발효시키자는 입장을 취한 반면, 일본은 추후 협상을 통해 미국을 복귀시키자는 태도를 유지했다.73)

2017년 5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TPP 체결당사국들은 별도로 회합하여 앞으로 TPP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7년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은 미국의 복귀를 위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TPP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74)

그러나 201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TPP 실무협의에서 TPP 체결당사국들은 조기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즉 우선 11개국 사이에 TPP를 발효시키고, 이후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

^{70) 「}TPP협상 "역사적 타결"…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다」(2015. 10.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7).

⁷¹⁾ 산업통상자원부(2015), p. 1.

^{72) 「}트럼프 'TPP 탈퇴' 서명… "앞으론 1대 1 직접 협상할 것"」(2017.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2).

^{73) 「}TPP 각료회의, 호주 "美빼고" 일본 "복귀시키자" 이견」(2017. 3.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2). 74) 「美제외 TPP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모색" (2017.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2).

^{/4) &#}x27;夫세외 122 11개국 11월까지 122 월요 당한 도색 』(2017. 5. 21), 논다한 기자(검색할. 2017. /. 22).

기로 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은 유지하고, 협정의 내용 수정은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나 투자 규범 등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둘러싼 논의는 2017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75)

2)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TPP는 총 3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1장이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규율한다. TPP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은 총 22개의 조항과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ㆍ미 FTA가 20개의 조항과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외형상 조항과 부속서의 수가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협정 본문의 경우, 보험의 신속한 이용 가능성에 관한 조항과 후선업무의 수행에 관한 조항이 한ㆍ미 FTA에서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TPP에서는 협정문 본문으로 이동되어 2개 조항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협정문 본문의 경우 권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는 반면, 부속서에는 일정한 유예기간 또는 상황의 성숙 등을 조건으로 당장 집행되기 어려운 내용이 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ㆍ미 FTA에서는 후선업무의 수행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TPP에서는 이러한 문언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부속서의 경우 TPP의 첫 번째 부속서와 두 번째 부속서가 각각 국경간 무역과 특정 양허를 다루는 것은 한·미 FTA와 동일하다. 그러나 TPP의 나머 지 세 가지 부속서들은 그 명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참여 국들의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들이다. 반면 한·미 FTA는 국경간 무역과 특정 양허에 관한 부속서 외에 두 가지 부속서가 더 있으며, 이 부속서들은 각각 금 융서비스위원회(부속서 13-다)와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부

^{75) 「}美빠진 TPP, 최소수정 후 신속발효 11월 APEC서 큰틀합의 목표」(2017.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2).

속서 13-라)을 규율하는 차이가 있다. TPP에는 없는 이 두 가지 부속서가 한 · 미 FTA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관한 부속서(부속서 13-다)의 제목이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과 무관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 미 FTA 협정 본문에 이미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는 점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관한 부속서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보험업자 사이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룰 보험 작업반의설치를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과 무관하지 않다.

표 2-3. TPP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구성		
조항번호	조항 제목	비고
제11.1조	Definitions	정의
제11.2조	Scope	적용범위
제11.3조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제11.4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제11.5조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6조	Cross-Border Trade	국경간 무역
제11.7조	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서비스
제11.8조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특정 정보의 취급
제11.9조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1.10조	Non-Conforming Measures	비합치조치
제11.11조	Exceptions	예외
제11.12조	Recognition	인정
제11.13조	Transparency and Administration of Certain Measures	특정 조치의 투명성 및 운영
제11.14조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자율규제기구
제11.15조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지급 및 청산 제도
제11.16조	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표 2-3. 계속

조항번호	조항 제목	비고
제11.17조	Performance of Back-Office Functions	후선업무의 수행
제11.18조	Specific Commitments	특정 양허
제11.19조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위원회
제11.20조	Consultations	협의
제11.21조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
제11.22조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투자분쟁
ANNEX 11-A	CROSS-BORDER TRADE	국경간 무역
ANNEX 11-B	SPECIFIC COMMITMENTS	특정 양허
ANNEX 11-C	NON-CONFORMING MEASURES RATCHET MECHANISM	비합치조치 역진방지 제도
ANNEX 11-D	AUTHORITIES RESPONSIBLE FOR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당국
ANNEX 11-E	-	제9장(투자)의 제9.6조(최소기 준대우) 위반을 원인으로 투자 자가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 을 브루나이, 칠레, 멕시코, 페 루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자료: TPP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가) 적용범위

TPP 금융서비스 규정도 투자에 관한 장과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이 '통합되는 한도에서만(only to the extent...are incorporated into...)' 금 융서비스 규정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한 점은 한 · 미 FTA와 유사하다.76 이에 따라 TPP 투자에 관한 장(제9장)의 제2절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최소기준대우 조항(제9.6조), 수용 및 보상 조항(제9.8조), 혜택의 부인(제9.15조)의 위반에 근거한 주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 점 역시한 · 미 FTA와 유사하다.77)

⁷⁶⁾ TPP 협정문 제11.2조(적용범위) 제2항.

⁷⁷⁾ Ibid., 제11.2조(적용범위) 제2항 (b)호.

나) 후선기능의 수행

TPP에서 후선기능의 수행은 협정 본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78) 한 · 미 FTA에서 구체적 약속의 내용으로서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형식상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후선기능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TPP에서는 후선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 · 미 FTA에는 없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작지 않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TPP에서 후선기능의 수행 조항은 크게 2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문은 당사국이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후선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과 운영에 중요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제1문은 한 · 미 FTA와 유사하다.

그런데 제2문은 당사국이 이러한 기능에 적용 가능한 국내규제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의적인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자의성(arbitrary)' 요건의 의미가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 및 자의적인 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예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WTO 분쟁사례를 비롯한 각종 분쟁사례에서 자의성과관련하여 내려진 판정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한 · 미 FTA 개정협상에서 TPP 제17조 제2문의 문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경우,우리나라로서는 국내 법제 및 관행의 정비가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해야 할 부담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된다.

다) 분쟁해결

TPP는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과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을 분리하여 각각 제11.21조와 제11.22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⁷⁸⁾ *Ibid.*, 제17조(후선기능의 수행).

염두에 두고 있는 분쟁의 본질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인 반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에 해당한다.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은 별도로 뒤이어 다루기로 한다.

TPP의 일반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 \cdot 미 FTA에는 4개 항만 있다. TPP에서 한 \cdot 미 FTA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4항이다.

제4항은 한 당사국이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항변인지를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다.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잠정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79)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는 서면 협의신청서 제출, 해당 신청서를 분쟁의 상대국 이외에 다른 TPP 당사국들도 회람, 협의 요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서면 답변, 서면 신청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부패성 상품인 경우15일 이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80)

TPP의 이러한 규정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면서도 그 절차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면서 협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두었다. 생각건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국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협정상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TPP의 다른 당사국에 대한 회람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써 투명성은 다소 악화되겠지만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효율성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TPP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서 제4항은 한 · 미 FTA에는 없는 부분인 만큼, 한 · 미 FTA의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

⁷⁹⁾ TPP 제11.21조(분쟁해결) 제4항.

⁸⁰⁾ Ibid., 제28.5조(협의).

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

TPP의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조항은 그 본질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한 · 미 FTA와 대동소이하며, 다만 예외에 기초한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 금융서비스위원에서 공동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패널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 요청 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TPP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조항은 투자자가 제11.11조(예외)에 기초한 주장을 하는 경우, 당국(authorities, 한 · 미 FTA의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유사함)에 예외가 정당한 항변이 되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공동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공동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패널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때 TPP는 그 기간을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20일이라는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로 규정한다. 81) 반면한 · 미 FTA에서 '결정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로 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82)

3) 전망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하여 TPP 체결당사국들은 이른바 각자 도생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TPP와 RCEP을 동시 추진해왔던 국가들은 중국 주도의 RCEP을 조기에 타결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의 TPP 체결당사국인 칠레, 페루도 RCEP 협상 참여국들과의 FTA를 추진하여 미국과의 교역 비중을 낮추고 중국과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도 일본, 중국, 인도와의 개별 FTA를 체

⁸¹⁾ TPP 제11.2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2항 c호 및 제4항.

⁸²⁾ 한 · 미 FTA 제13.19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1항 가호 및 다호.

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멕시코, 페루도 자국과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TPP 체결당사국들과 양자 FTA를 체결할 의지를 밝혔다.83)

한편 미국을 제외한 TPP 협상 참여국 11개국은 2017년 3월에 베트남, 5월에 캐나다, 7월에 일본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TPP의 앞날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TPP 11개국은 중국, 콜롬비아, 우리나라와 3월에 칠레에서 TPP의 앞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TPP 11개국은 2017년 8월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TPP의 앞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참여가 없더라도 TPP 발효를 강행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거론된다. 특히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은 피하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NAFTA 재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캐나다는 미국의 참여가 없더라도 TPP를 발효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84 TPP 협상 참여국 11개국의 움직임을 계속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1) 추진 경과

2007년 EU와 캐나다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 사이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8년 이전 에 연구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양측 사이에 무역 을 자유화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측은 2009년부터

^{83) 「}트럼프 탈퇴 후 TPP 가입국 "협정 무의미···각자도생"」(2017. 2.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8).

^{84) &}quot;Australia Meeting Could Test Support for Pacific-Trade Pact"(2017. 8. 1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7. 8. 14).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9월 26일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85)

그러나 이후 EU 내에서의 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다양한 반대 이유들 중에서 예컨대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가 투자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 내에서의 CETA가 비준은 28개 EU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불가능했다. 때문에 벨기에 총리는 왈로니아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협상하였고 결국 2016년 10월 27일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86)

EU와 캐나다는 2016년 10월 30일 CETA에 정식으로 서명했고,⁸⁷⁾ 유럽의 회는 2017년 2월 15일 CET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였다.⁸⁸⁾

2)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CETA는 총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며 제13장에 위치한다. 한 · EU FTA에서 '서비스 무역 · 설립 및전자상거래'라는 명칭의 장 아래에 한 부분으로 금융서비스를 규정한 것과 구별된다. EU의 태도 변화라고 볼지, 또는 협상 상대인 캐나다의 FTA 양식이 반영된 것인지는 앞으로 EU가 체결하게 될 FTA를 더 관찰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은 외견상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신금융서비스, 자율규제기구, 건전성 조치, 정보의 이전, 금융서비스 투자 분쟁 등 주요 조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다만 건전성 조치의 예외(제13.16조)에 관한 조항 외에 건전성 조치의 인정(제13.5조)에 관한 조항의 명

⁸⁵⁾ Government of Canada(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12).

^{86) 「}벨기에, CETA 이견조율 극적 타결…최종서명 박차」(2016. 10.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7. 22).

⁸⁷⁾ European Commission(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8).

⁸⁸⁾ European Commission(2017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8).

칭들만을 살펴보았을 때 발견되는 CETA만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장은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이 장에서는 나머지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2-4.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구성		
T 등 LH 등	포증! 게므	
조항번호	조항 제목	
제13 1주	Definitions	정의

조항번호	조항 제목	비고
제13.1조	Definitions	정의
제13.2조	Scope	적용범위
제13.3조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제13.4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제13.5조	Recognition of prudential measures	건전성 조치의 인정
제13.6조	Market access	시장접근
제13.7조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13.8조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3.9조	Performance requirements	이행 조건
제13.10조	Reservations and exceptions	유보 및 예외
제13.11조	Effective and transparent regulation	효과적이고 투명한 규제
제13.12조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자율규제기구
제13.13조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지급 및 청산 제도
제13.14조	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서비스
제13.15조	Transfer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이전
제13.16조	Prudential carve-out	건전성 조치의 예외
제13.17조	Specific exceptions	구체적 예외
제13.18조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금융서비스위원회
제13.19조	Consultations	협의
제13.20조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
제13.21조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투자분쟁

자료: CETA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가) 적용범위

첫째.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장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CETA가 한 · 미 FTA보다 제한이 줄어든 방향으로 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CETA는 1)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자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 2)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관련된 조치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조치에 제8장 (투자)이 '적용된다.'89) 반면 한 · 미 FTA에서는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 에 관한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only to the extent… are incorporated into···)'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90) 즉 한 · 미 FTA에서는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될 때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융서비 스에 관한 장이 적용되고 투자에 관한 장의 적용은 배제된다. 다만 완전히 통합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하다. 때 문에 성질상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FTA의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고 상 대방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CETA는 이 러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투자에 관한 장이 단순히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CETA가 한ㆍ미 FTA보다 투자에 관한 장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으로의 통합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한이 줄어든 방향 으로 규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서비스의 성질상의 특 성을 내세워 통합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재량권은 간접적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 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인 측면이

⁸⁹⁾ CETA 제13.2조(범위) 제2항. 비록 CETA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기는 했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서비스 공급자 양자 모두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정도만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유형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⁹⁰⁾ 한 · 미 FTA 제13.1조(적용범위) 제2항.

있어 이 점에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둘째, CETA는 투자에 관한 장의 주요 조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 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재차 규정한 특징이 있다. 즉 CETA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투자에 관한 장이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적 용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면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된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다.91) 즉 투자 및 투자의 대우(제8.10조), 손실 보상(제8.11조), 수용(제 8.12조), 송금(제8.13조), 혜택의 부인(제8.16조), 형식요건(제8.17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미 전 항에서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 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내용이지 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다고 밝혔음에도, 이들 투자 보호에 관한 주요 조항을 재차 언급한 것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고유한 성격에 기초하 여 투자 보호에 관한 주요 조항들의 적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항변이 제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러 측면에서 CETA는 '통합되는 한도에서만'이라는 조건을 둔 한 · 미 FTA에 비해 금융서비스의 고유성 또는 자율성보다는 투자자 및 투자 보호에 더 강조 점을 둔 협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셋째, CETA에서는 투자에 관한 장 이외에 국내규제에 관한 장도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CETA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 보다 명확하게는 제12.3조(인가 및 자격 요건 및절차)가 금융규제당국의 법정 재량권 행사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92) 국내규제에 관한 장을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시켜 금융규제당국의 재량권 행사

⁹¹⁾ CETA 제13.2조(범위) 제3항.

⁹²⁾ *Ibid.*, 제13.2조(범위) 제6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Chapter Twelve (Domestic Regulation)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Chapter. For greater certainty, Article 12.3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pplies to the exercise of statutory discretion by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f the Parties.

를 제약하려는 이와 같은 조항은 한 · EU FTA 그리고 한 · 미 FTA에서도 없던 내용이다. 특히 바로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 · 미 FTA에서 투자에 관한 장과 관련하여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고 제한을 두던 것 보다는 훨씬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항을 신설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조문 자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즉 비록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금융규제당국의 재량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EU와 캐나다 양측 사이의 국제적 규범인 CETA의 기준인 국내규제에 관한 장의 제12.3조(인가 및 자격 요건 및절차)를 적용하여 그 당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규제당국의 규제 재량의 축소 또는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끝으로 CETA는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한 · EU FTA와 대비된다. 한 · EU FTA의 협상 당시에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라는 용어 대신 '설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93) 그러나 CETA에서는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CETA의 문언은 한 · 미 FTA의 문언에 가까워졌다.94)

나) 정의

첫째, CETA에서는 '인가(authorized)'라는 표현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에서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국내규제에 관한 장을 적용하여 금융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 관한장의 적용범위에 언급된 금융기관의 정의에서 국내규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인가를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한 ·미 FTA에서의 정의처럼 인가를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국내규제의 장의

⁹³⁾ 한 · EU FTA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1항.

⁹⁴⁾ 한 · 미 FTA 제13.1조(적용범위) 제1항.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으로의 통합 적용에 앞서 쟁점이 된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것이 되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규제의 장의 통합적용을 고안하면서까지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한 · EU FTA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다. 한 · 미 FTA에는 금융기관에 관한 정의가 있지만,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이라고만 정의되어 있어, 금융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 공적 주체(public entity)의 배제 여부, 지점(branch)에 대한 금융기관 인정여부 등이 모호하다. 그러나 CETA는 금융기관을 소재지인 당사국의 법률에의해 금융기관으로서 규제 또는 감독 받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라고 정의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또한 CETA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의에서 공적 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러한 단서 역시 한 · 미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끝으로 지점에 대해서도 CETA는 본점(head offices)이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이어떤 당사국에 있는 경우 이 지점은 소재지국인 그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점과 관련한 논란도 명확히 정리하였다.95)

⁹⁵⁾ CETA 제13.1조(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inancial institution means a supplier that carries out one or more of the operations defined as being financial services in this Article, if the supplier is regulated or supervised in respect of the supply of those services as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law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it is located, including a branch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at financial service supplier whose head offices are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inancial service supplier means a person of a Party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a financial service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but does not include a public entity;

다) 신금융서비스

CETA의 신금융서비스 조항은 기존의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96) 신금융 서비스의 정의는 한 · 미 FTA 및 한 · EU FTA와 동일하다. 조항의 내용도 유사 하다.97) 다만 형식적으로 한 · 미 FTA 및 한 · EU FTA가 하나의 항에서 규정 하던 것을 CETA는 항을 나누어 규정한 정도의 차이만이 발견된다.

라) 정보의 이전

CETA의 정보의 이전 조항은 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98) 이러한 규정 형식은 한 · EU FTA의 예와 동일하다. 더불어이전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요구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한 · 미 FTA 및한 · EU FTA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CETA는 이른바 기능의 수행(performance of functions)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구체적 약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 미 FTA 및 협정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 EU FTA와 다른 점이다. 정보의 이전이 내용물이라면 기능의 수행은 그릇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이전을 허용하면 이전된 정보의 처리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한 · 미 FTA 및 한 · EU FTA의 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에서 정보의 처리는 열거된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들의 국외 위탁 처리는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 이행요건

CETA의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은 CETA만이 가진 특징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협정 당사국인 EU와 캐나다에게 투자에 관한 협정에 규정

⁹⁶⁾ CETA 제13.14조(신금융서비스).

⁹⁷⁾ Ibid., 제13.1조(정의).

⁹⁸⁾ Ibid., 제13.15조(정보의 이전 및 처리).

된 이행요건과 같은 이행요건에 관한 규율에 대해 협상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다.99) 또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100) 합의를 위한 시간을 명시하고, 또 합의 실패에 대비하여 미리 그 대안까지 법적 의무로서 규정하여 둔 인 상적인 규정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CETA 투자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은 투자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01) 투자와 관련하여 금지된 유형인 7개의 요건과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 유형의 요건과 관련하여 금지된 유형인 4개의 요건은 한 · 미 FTA에서 열거된 요건과 각각 동일하다. 102)

3) 전망

EU와 캐나다는 2017년 9월 21일부터 CETA를 잠정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03) CE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되려면 EU 각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 104)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별

⁹⁹⁾ CETA 제13.9조(이행요건) 제1항.

¹⁰⁰⁾ Ibid., 제13.9조(이행요건) 제2항.

¹⁰¹⁾ Ibid., 제8.5조(이행요건).

¹⁰²⁾ 한 · 미 FTA 제11.8조(이행요건).

^{103) 「}캐나다 · EU, CETA 9월 발효 잠정 합의」(2017. 7.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8).

¹⁰⁴⁾ European Commission(2017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8).

로 그리고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한 · 미 FTA의 경우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incorporated)되는 한도에서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그결과 투자에 관한 장에 규정된 ISDS가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한 · EU FTA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 16일 EU가 ISDS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상설적인 투자법원의 설립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있을 한 · EU FTA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EU의 제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 이후의 EU 및 EU의 협상 상대국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한 · 미 FTA에는 금융서비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 · 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중요성을 더해 가리라고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정 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도 앞서 정의 조항과 유사하게 FTA 별로 유형이 포함되는 유형이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한 · 미 FTA와 한 · 중 FTA는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였으나 한 · EFTA FTA에서는 개인 금융고객의 거래 및 계정 정보라는 유형 없이 다른 두 가지 유형만 예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같은 유형에 대한 규정이라도 FTA 별로 조금씩 그 문언이 달라 범위나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일정 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 · 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 · 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이 기준 인지, 즉 실질적인 비밀성이 없는 단지 형식적인 비밀표지만 갖춘 서류여도 비 밀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신금융서비스에 관련해서는 동종 상황의 개념이 중요한데 FTA는 물론 관련 판정례에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 없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식별되었다.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TPP와 CE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FTA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PP에서는 후선기능의수행,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들이한 · 미 FTA와 차이가 있었다. 먼저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TPP의 조항은한 · 미 FTA에는 없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식별되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한 · 미 FTA의 조항은 당사국이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후선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기관의 효율적인경영과 운영에 중요함을 인정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한다. 그런데 TPP의 조항은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국이 이러한 기능에 적용 가능한 국내규제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의적인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고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TPP 금융서비스 분야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에 관한 규정인데 한 · 미 FTA에는 없던 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었다. 신설된 항의 내용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한 당사국이 예외 조항에 근거한 항변이 타당한 항변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TPP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은 금융서비스위원에서 공동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패널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 요청 기간에서 한 · 미 FTA와 차이를 보였다. 즉 TPP는 그 기간을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20일이라는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로 규정한다. 105) 반면 한 · 미 FTA에서 '결정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106)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 · EU FTA는 물론 한 · 미 FTA와 비교해 볼 때도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먼저 CETA의 정의 규정에서는 특히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인가(authorized)'라는 표현이 한 · 미 FTA의 금융기관에 대한정의에는 있으나, CETA의 정의에서는 삭제되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점을 명확히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 · EU FTA 는 물론 한 · 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CETA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협정 당사국인 EU와 캐나다에게 투자에관한 협정에 규정된 이행요건과 같은 이행요건에 관한 규율에 대해 협상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면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당사국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¹⁰⁵⁾ TPP 제11.2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2항 c호 및 제4항.

¹⁰⁶⁾ 한 · 미 FTA 제13.19조(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제1항 가호 및 다호.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건전성 조치는 법령상의 조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감시 또는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과 구분된다. 107) 즉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보장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 및 기타 요건과 관계되며, 감독은 이러한 요건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108)

FTA 협정에서는 건전성 조치를 당사국이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09) 그러 므로 건전성 조치의 요건은 1) 건전성 사유(prudential reasons)가 존재할 것 2) 해당 조치가 건전성 사유로(for) 취해질 것이라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당사국, 즉 국가라는 것과 신규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것도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 중요한 요건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위두 가지 요건으로 정리한다.

첫째 요건인 '건전성 관련 사유(prudential reasons)'에 대해 한 · 미 FTA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 건전성 ·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 예시를 제공한다. 110) 반면 TPP 협정은 여기에 더하여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

¹⁰⁷⁾ 채은선(2012, p. 115, 재인용).

¹⁰⁸⁾ 위의 자료.

¹⁰⁹⁾ 한 · 미 FTA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제1항.

¹¹⁰⁾ *Ibid.*, 제13.10조 제1항의 각주 5. 영문 정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영상의 완전성'을 추가하였다.111)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 자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 비시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이른 바 '뱅크런(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의 경우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 융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규제 활동을 포괄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2)

둘째 요건인 건전성 사유'로(for)' 취해질 것의 정확한 의미는 직관적이지 않다. 일견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형법과 같은 국내법이 대개 주관적 의도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무역협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째 요건의 의미를 목적이나 의도로 새기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둘째 요건의 의미는 의도가 아닌 효과(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인과관계 또는 관련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후술할 WTO 분쟁사례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과도 합치된다.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싱가포르 FTA

한 · 싱가포르 FTA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한 · 싱가 포르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¹¹¹⁾ TPP 제11.11조(예외) 제1항의 각주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afety, and financial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112) 「}리스크 커지는 금융, 정책대응 시급하다」(2017. 8.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8.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종 협의체를 신설했다. 미국은 2010년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 감독 및 예금보험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전감시 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신설했다. 영국도 2012년 금융안전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잉글랜드 은행 내에 신설했다.

유사하지만 규정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GATS의 국내규제 조항을 벗어나 예외 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형식적인 구성의 측면을 보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에 관한 항(제2조 나항)까지 한 · 싱가포르 FTA에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일견 당 연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후술할 한 · 인도 그리고 한 · EU FTA는 비밀정보 공 개요구 금지에 관한 내용도 건전성 조치에 포함시켜 규정한다. 한 · 인도 FTA 의 경우에는 GATS와 동일한 규정 체계에 따라 국내규제에 관한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에 관한 항을 GATS 와 같이 건전성 조치에 관한 항과 나란히 규정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한 · EU FTA의 경우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조항을 신설하 였음에도 여전히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에 관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싱가포르와 EU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 조항(이하 'GATS 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자국 FTA에서의 건전성 조치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EU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 전성 조치 조항과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에 관한 항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싱가포르는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는 건전성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한ㆍ싱 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규정에서는 비밀정보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 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다만 한·싱가포르 FTA의 비밀정보 취 급에 관한 조항은 공공정보와 기업정보만을 언급하고 있어 투자자. 예탁자. 보 험계약자 중 자연인인 경우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문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한 · 싱가포르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또는 다른 FTA와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언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건전성 사유에 대한 예시를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협정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FTA에서는 각주를 통해 건전성 사유에 포함되는 유형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각주를 사용한 FTA에서는 이러한 주석이 협정본문에 통합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건전성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는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 내용의 소극적 조건 하나만 두고 있다. 조건을 하나만 제시한 점에서는 한・미 FTA에 가까운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문언이 한・미 FTA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한・미 FTA는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는 반면, 한・싱가포르 FTA는 다른 조항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다른 조항의예외라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며 조항의 명칭 또한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이러한 문언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표 3-1. 한·싱가포르 FTA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싱가포르 FTA 국문 정본	GATS 국문번역본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2.6조 (예외)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자・예 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 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국내규제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과 같은 합리적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그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 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표 3-1. 계속

한 · 싱가포르 FTA 국문 정본	GATS 국문번역본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2.6조 (예외)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자료: 한·싱가포르 FTA와 GATS 국문번역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나. 한·EFTA FTA

한 · EFTA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에 규정 되어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조항의 명칭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와 마찬가지로 '국내규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제기된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유형이 국내규제 조치에 한정되는 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후술할 WTO 분쟁사례인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에서 상소기 구가 조항의 명칭도 문맥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접근 조치도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 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과 형식과 문언이 유사한 한 · EFTA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러나 중요한 참고는 될지언정.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한 · EFTA는 엄연 히 별개의 협정이고 중재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정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 · EFTA를 개정할 수 있 는 계기가 있는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명시해 둔다면 앞으로 발 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항의 구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필요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 \cdot EFTA FTA는 한 \cdot EU FTA와 유사하고 한 \cdot 미 FTA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cdot EFTA FTA에서는 한 \cdot EU FTA에서 발견되는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등록 요구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는 한 \cdot EU FTA와 차이가 있다.

표 3-2. 한·EFTA와 한·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EFTA 국문 정본 제4장(금융서비스) 제4.8조(국내규제)	한 · EU FTA 국문 정본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1.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또는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³⁷⁾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는 유사한 금융시성 삼아사의 모호, 또는 나.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표 3-2. 계속

한 · EFTA 국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제4장(금융서비스) 제4.8조(국내규제)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한·EFTA 국문 정본; 한·EU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다. 한·ASEAN FTA

한·ASEAN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 첨부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서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도 협정문 본문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¹¹³⁾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ASEAN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의 특징은 한·EU FTA의 유형과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이 혼합된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즉 조항의 명칭이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이고 그 내용도 오로지 금융건전성에 관한 내용만으로 단독의 조항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한·EU FTA의유형에 가깝다. 조항의 명칭이 '국내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구별되고, 일반적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미 FTA와 구별된다.

반면 이 조항은 조항의 명칭이 일반적 '예외'가 아닌데도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시작하고 있다. 후술할 WTO 분쟁사례인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정에 따르면 이 문구는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이 예외 조항이라는 근거가 되고, 조항의 명칭도 이러한 문맥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WTO 판정례에 따르면 한·ASEAN FTA의 건

¹¹³⁾ 한 · ASEAN FTA 제27조(기타 조항) 제1항.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전성 조치 조항은 그 조항의 명칭이 한 · EU FTA의 명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GATS 조항과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될 것이다.

나머지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 금지, 비밀정보 보호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丑 3-3.	한 · ASEAN,	GATS,	한 · EU	FTA	건전성	조치 조항 비	II.
--------	------------	-------	--------	-----	-----	---------	-----

한 · ASEAN FTA 국문 정본	GATS 국문번역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2.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 융 안정성	2. 국내규제	-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_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투자 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 용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 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금융건전성 사유로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 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 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 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 지 아니한다.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 ³⁷⁾ 로 조치를 채택 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 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 성 및 안정성의 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 니한다.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 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 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 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 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 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

표 3-3. 계속

한 · ASEAN FTA 국문 정본	GATS 국문번역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7장(금융서비스)
		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 한다.
나.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 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 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 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 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 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 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 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주: 한·ASEAN FTA에는 제2조 (가)항에 '환율의 안정성'에 각주 1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또한 제2조 (가)항의 (2)호 및 (3)호도 투기적 자본흐름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하였음.

자료: 한·ASEAN FTA 국문 정본; GATS 국문번역본; 한·EU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라. 한·인도 FTA

한・인도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이 없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에 첨부된 부속서에서 규정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조 항의 명칭과 체계 그리고 문언까지 모두 GATS 조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다. 더불어 한・인도 FTA 국문 정본에서 비밀정보의 공개 금지에 관한 항의 문 언이 한・ASEAN 및 한・EU FTA 국문 정본은 물론 GATS 국문 번역본과 다른 점도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문 정본의 문언 차이가 수식의 범위를 달라지 게 했고 그 결과 표현의 다양성이 아닌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주목된다. 정확한 국문 정본 작성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숨 가쁘게 체결해 온 FTA들을 돌아보고 정비할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먼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의 유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 째, 조항의 명칭이 '국내규제'이다. 때문에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의 적용범 위에 국내규제 조치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앞의 한 · EFTA FTA에 대한 서술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둘째. 규정의 체계 역시 제1항 단서에서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 금지를 그 리고 별도의 제2항에서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를 규정한 것도 GATS 금융서 비스부속서와 같다.

셋째, 문언도 동일하다.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국문 번역본은 건전성 사 유를 합리적 이유로 번역하였지만 이것은 번역에 따른 차이일 뿐 영문 정본은 양자 모두 건전성 사유(prudential reasons)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丑 3-4.	한·인도	FTA와	GATS의	건전성	조치	조항 년	비교
--------	------	------	-------	-----	----	------	----

한 · 인도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GATS 영문정본 및 국문 번역본
제6장(서비스무역)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2. 국내규제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기.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투자자 · 예금자 ·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 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국내규제

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 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 니한다.

표 3-4. 계속

± 0 4. 114	
한 · 인도 FTA 국문 및 영문정본	GATS 영문정본 및 국문번역본
제6장(서비스무역)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장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 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 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NNEX 6-C(FINANCIAL SERVICES) 2. Domestic Regulation (b) Nothing in this Annex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2. Domestic Regulation (b) Nothing in the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Member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자료: 한 \cdot 인도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GATS 영문정본 및 국문 번역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한 · 인도 FTA의 비밀정보의 공개 금지에 관한 항을 동일한 내용의항을 두고 있는 한 · ASEAN, 한 · EU FTA, 한 · 인도 FTA 국문 정본 그리고 GATS 국문 번역본과 비교해 본다. 영문 정본의 문언은 이들 네 협정이 동일하다. 그런데 국문 정본은 한 · 인도 FTA와 나머지 협정들이 서로 다르다. 한 · 인도 FTA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이라는 문언이 정보의 첫째 유형인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와 정보의 둘째 유형인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모두를 수식한다. 반면 나머지 협정들의 해당 문언은 두 번째 유형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

고 저렇게 표현해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번역 과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선다.

표 3-5. 한·인도, 한·ASEAN, 한·EU FTA 및 GATS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인도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한 · ASEAN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제6장(서비스무역)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2. 국내규제 나.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공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 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ANNEX 6-C(FINANCIAL SERVICES) 2. Domestic Regulation (b) Nothing in this Annex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2. Prudential Measures, Exchange Rate and Financial Stability (b)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한 · EU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GATS 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2. 국내규제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 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한 · EU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GATS 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
제7장(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ARTICLE 7.38: PRUDENTIAL CARVE-OUT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onsu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2. Domestic Regulation (b) Nothing in the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Member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r any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public entities.

자료: 한 · 인도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한 · ASEAN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및 영문 정본; GATS 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동일한 문언의 영문 정본에 대한 국문 정본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영문 정본에서 해당 문언이 속한 문장의 문맥만을 볼 때 중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조약의 해석은 조약문의 문맥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모호하면 조항의 대상과 목적을 이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14) 물론 이러한 해석 규칙에 따르더라도, 대상과 목적에 대한 판단이 해석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조약의 정확한 해석이 늘 쉽고 명쾌한 일인 것은 아니다.

해당 항의 대상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항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 항은 금융서비스 규정이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 관련 정보, 그리고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두 유형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협정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협정 당사국에게 부당한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 항의 규율 대상이자 목적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이라는 문언은 이 두 유형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1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국문 번역본」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제1항.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더 논리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협정당사국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범은 수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즉 수범자의 능력 또는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그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ATS에 대해 해설한 한 학자도 비록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항은 오직 회원국이 보유한 정보만을 규율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필자와 같은 결론을 취했다. 115) 결국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해당 항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의 금융정보, 그리고 비록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이와 다른 해석, 즉 해당 문언이 둘째 유형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GATS를 해설한 정부 부처의 자료도 비록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GATS에서 해당 항을 이와 같이 해설했다. 116) 한·ASEAN, 한·EU FTA, 한·인도 FTA 국문 정본 그리고 GATS 국문 번역본 모두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규정된 것을 보아도 오류 있는 GATS 국문 번역본의 표현을 이후의 FTA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복 사용한 결과라고만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협정당사국의 금융당국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해 금융서비스 규정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선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해당 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검토의 범위를 넓혀 본다.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는 비밀정보에 관한 그 외의 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가 속한 GATS를 살펴보면, 비밀정보에 관련

¹¹⁵⁾ Munin(2010), p. 418.

¹¹⁶⁾ 법무부(2000), p. 254.

된 두 개의 조항, 즉 제3조의 2(비밀정보의 공개)와 제14조(일반적 예외)의 c항 (ii)호가 있다.117) 그런데 제3조의 2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뿐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4조 c항 (ii)호는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를 규정하는데, (i)호가 기만행위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14조 c항은 (i)호와 (ii)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i)호의 기만행위는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할 것이므로 (ii)호에 규정된 개인의 비밀정보도 협정당사국이 보유 중인 정보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하는 개인의 비밀정보라고 보는 것이 조항의 체계에 맞는 해석일 것이다.

GATS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규정의 제정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제14조 c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한 GATS의 조항은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부속서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규정을 했다면 GATS의 일반 조항과는 차별화된 내용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GATS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한내용을 GATS에 부속된 분야별 부속서에서 중복 기술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이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의 개인의 비밀정보는 GATS의 조항이 전제하는 개인이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아닌, 개인의 비밀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해당 항 밖의 그리고 해당 금융서비스 규정 밖의 GATS 일반 조항을 참조한 것이다. 때문에 다른 FTA에서도 GATS 제14조 c항은 (i) 호와 (ii)호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어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¹¹⁷⁾ Munin(2010), p. 418. 이 책의 저자는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를 규정한 GATS의 이들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고만 언급하였음.

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 인도 FTA, 118) 한 · ASEAN FTA, 119) 그리고 한 · EU FTA120)에 각각 GATS의 해당 조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발견된다. 실제 FTA 협정당사국 사이의 의도가 GATS에서와 달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다면 한 · EU, 한 · ASEAN FTA 국문 정본의 해당 문언은 한 · 인도 FTA의 예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한·EU FTA

한 · EU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협정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121) 한 · 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GATS 금융서비스 및한 · 미 FTA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 · EU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의 명칭과 문언은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이 GATS나 한 · 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과 같은 좁은 의미의 엄격한 예외조항이 아니라 규제당국에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 부여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먼저 건전성 조항의 명칭이 다른 FTA들과 같이 '예외'가 아니라, 한 · EU FTA는 '건전성 조치 예외'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은 '안보상 예외(security

¹¹⁸⁾ 한 · 인도 FTA는 제6장(서비스무역) 제1항 다호 1)목 및 2)목에서 GATS 제14조 c항 (i)호와 (ii)호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다.

¹¹⁹⁾ 한 · ASEAN FTA는 서비스협정 제13조(일반적 예외) 다항 (1)목 및 (2)목에서 GATS 제14조 c항 (i) 호와 (ii)호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다.

¹²⁰⁾ 한 · 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7.50조(예외) 마호 1)목 및 2)목이 GATS 제14조 c항 (i)호와 (ii)호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다.

¹²¹⁾ 한 · 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5관(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exceptions)'를 연상시킨다. GATS의 경우 안보상 예외는 일반적 예외와 달리 필요성 요건 등이 제거되어 조치국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한 · 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은 그 문언도 다르다.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또는 한 · 미 FTA에서 발견되는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 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 라는 문언 없이, 곧바로 회원국이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아간다. 한 · EU FTA 건전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 성과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을 예외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무역구제에서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에 비해 더 엄격하고도 많은 요건이 요구되어 조치 발동을 위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예외적 조치라고 부를 수 있을 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항을 일반적 예외 조항과 같이 좁은 의미의 예외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언과 제목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은 예외적 '권리'라는 의미일 뿐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이 '예외'라는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또는 한 · 미 FTA의 예외가 보다 좁고 엄격한 예외이고 한 · EU FTA에서의 건전성 조치 예외는 넓은 의미의 완화된 예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예외라는 의미는 예컨대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에 관한 조항이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예외인 것과 유사한 반면 흔히 예외라고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조항과는 대비된다.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일반 조항인지 아니면 예외 조항인지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조항의 성격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분배가 달라지는 점에 있다. 일반 조항이라면 주장하는 측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일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하는 측이 이를 반박할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이 예외 조항이라면 '예외는 엄격하게'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외를

주장하는 측이 높은 심사기준에 맞춰 입증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고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둘째, 항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다른 FTA에도 있는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 금지,122) 비밀정보의 보호123) 이 외에도 필요성, 등록의 요건이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성이란 건전성 조치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보다더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124) 악용 금지와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 EU FTA는 필요성 요건의 부과라는 측면에서한 · 미 FTA보다더 엄격한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엄격성은 규제 당국에 대한 것으로서 규제 재량의 축소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다수의 WTO 분쟁사례에서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 각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필요한(necessary)'이라는 문언은 '관련된(related to)'이라는 문언보다좁은 의미로서 다른 덜 무역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필요성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판정되었기 때문이다.125) 그리고 등록은 협정당사자가 다른 쪽 협정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126)

한편 비밀정보의 보호도 한 · EU FTA의 중요한 특징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 · ASEAN, 한 · 인도 FTA도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항을 두고 있지만, 이들 FTA는 GATS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 · EU FTA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에 관한 조항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의 원인은 EU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조치 조항과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에 관한 항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여

¹²²⁾ Ibid., 제2항.

¹²³⁾ Ibid., 제3항.

¹²⁴⁾ Ibid., 제2항.

¹²⁵⁾ WTO(2005), para. 308.

¹²⁶⁾ op cit., 제4항.

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의 이러한 긴밀한 관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예컨대, EU는 건전성 조치를 예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격을 국내규제 조치로 보고 또 국내규제에는 비밀정보의 보호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EU가 비밀정보의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건전성 조치가 더 이상 국내규제 조치에 한정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시장접근 등 어떤 다른 조치에도 비밀정보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 EU의 입장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건전성 사유에 포함될 유형이 확대되었다. 한・싱가포르, 한・EFTA FTA는 건전성 사유로 크게 두 가지, 즉 투자자나 예탁자 등의 보호, 그리고 금융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다고 조항의 본문에서 규정했다. 그런데 한・EU FTA는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에 각주로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도 포함된다고 추가하였다. 127) 생각건대 그 이유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이라고 했을 때에 '개별'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각주를 통해 건전성 사유에 포함되는 유형을 확대한 방식은 후술할 한・미 FTA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외에도 개별 '금융기관'도 추가한 것이 한・EU FTA와의 차이점이다.

물론 결국 이러한 유형들을 '포함(including)'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므로 건전성 사유에 포함되는 유형이 추가된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다면 그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 한 · EU FTA의 건전성 사유 확장과 관련하여 협정 본문에서는 금융 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이라고 두 가지 특성을 제시한 반면, 각주에

¹²⁷⁾ Ibid., 제7.38조 각주 37.

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 '건전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정례도 알려진 것은 없다.

표 3-6. 한·EU FTA와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111/14 [220 22] 28 -12
한 · EU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국문 정본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 (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 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³⁷⁾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 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 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⁵⁾ 로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 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 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

자료: 한 \cdot EU FTA 국문 정본; 한 \cdot 미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바. 한·페루 FTA

한 · 페루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되어 있다. 한 · 페루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의 특징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가 후술할 한 · 미 FTA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한 · 미 FTA 유형으로 부류되다.

첫째, 조항의 명칭은 '예외'이다. 문언도 예외를 나타내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둘째, 항의 구성도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수 없다는 내용을 건전성 조치에 관한 내용과 같은 항에서 규정한다. 셋째, 건전성 사유를 각주를 통해 확장하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후술할 한 · 미 FTA에서도 발견된다.

표 3-7. 한·페루와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페루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국문 정본			
제12장(금융서비스) 제12.10조(예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 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및 제11 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 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 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 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⁶⁾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 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 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⁵⁾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한ㆍ페루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국문 정본
제12장(금융서비스)	제13장(금융서비스)
제12.10조(예외)	제13.10조(예외)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그러한 규정상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된다.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	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된다.	양해된다.

자료: 한·페루 FTA 국문 정본; 한·미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사. 한·미 FTA

한 · 미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13장(금융서비스)의 협정 본 문에 규정되어 있다. 한 · 미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한 · EU FTA와 더불어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많은 특징이 있다.

첫째, 조항의 명칭도 '예외'이고, 시작되는 문언도 좁은 의미의 예외를 나타내는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이다. 128) GATS 조항도 유사한문언으로 시작하는데, 후술할 WTO 판정례에서도 GATS 조항의 법적 성격을 좁은 의미의 예외 조항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한 · EU FTA에는 이러한 문언이었다. 그러므로 한 · 미 FTA는 좁은 의미의 예외로 볼 수 있다. '예외는 엄격하게'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¹²⁸⁾ 한 · 미 FTA 및 영문 정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제1항.

둘째, 항의 구성에서 한 · 미 FTA는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 금지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둔다. 한 · EU FTA가 이외에도 비밀정보의 보호, 필요성, 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셋째, 한 · 미 FTA는 건전성 사유에 포함될 유형을 확대시켰다. 즉 조항의 본문에서 건전성 사유에 포함될 두 가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다른 FTA와 유사하나, 각주를 통해 '개별'적인 '금융기관' 및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듯 각주를 통해 건전성 사유에 포함될 유형을 확장하는 방식은한 · EU FTA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한 · EU FTA에서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되었을 뿐인데,한 · 미 FTA는 개별 '금융기관'에까지 확대시켰다.한 · 미 FTA에서 '금융기관'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금 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밖의 기업을 의미한다. 129)

표 3-8.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한 · 미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영문 정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CHAPTER 13(FINANCIAL SERVICES) ARTICLE 13.10(EXCEPTIONS)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 (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 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⁵⁾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Eleven(Investment), Fourteen(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pecifically Article 14.23 (Relation to Other Chapters), or Fifteen(Electronic Commerce), and, in addition, Article 12.1.3(Scope and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⁵⁾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¹²⁹⁾ Ibid., 제13.20조(정의).

표 3-8. 계속

한 · 미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영문정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CHAPTER 13(FINANCIAL SERVICES) ARTICLE 13.10(EXCEPTIONS)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 건전성 ·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자료: 한 \cdot 미 FTA 국문 정본; 한 \cdot 미 FTA 영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아. 한·터키 FTA

한 · 터키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한 · 터키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한 · EU FT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 EU FTA에서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п 3−0	하 · 터키와	하. 디디	ET \ OI	거저서	ㅈᅱ	ㅈ하 I	нιш
TT .7-9	51 · LIVIER	91 · F()	FIASI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ハハ	7,01	⊔ 1 11′

한ㆍ터키 FTA 국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다 (금융서비스)	제7장 (금융서비스)
2. 건전성 조치 예외 ²²⁾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 ²³⁾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 ³⁷⁾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표 3-9. 계속

한 · 터키 FTA 국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다(금융서비스)	제7장(금융서비스)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 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나.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 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 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용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라.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 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22)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 융감독기관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 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 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해진다.	-
23)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 된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 된다.

자료: 한 \cdot 터키 FTA 국문 정본; 한 \cdot EU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자. 한·호주 FTA

한 · 호주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13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되어 있다. 한 · 호주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한 · 미 FT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 미 FTA에서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3-10. 한·호주와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호주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국문 정본	
제8장(금융서비스) 제8.10조(예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특히 제9.2조(다른 장과 의 관계)를 포함한 제9장(통신), 제11장(투자)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 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 에 의한 한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 (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 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 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 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¹⁶⁾ 로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 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 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⁵ 로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 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6)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 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무결성 또 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 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 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자료: 한·호주 FTA 국문 정본; 한·미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차. 한·캐나다 FTA

한 · 캐나다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10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되어 있다. 한 · 캐나다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한 · 미 FT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 미 FTA에서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Π 2_11	우는 게 나나이	하미	FTA의 건전성	조취 조하다	41.77
並 3-11.	인ㆍ게나다와	인민	TIA의 신연성	조시 오잉 '	ᆀᄴ

한 · 캐나다 FTA 국문 정본	한 · 미 FTA 국문 정본
제10장(금융서비스) 제10.10조(예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1.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정부조달)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 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 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⁸ 로 조치를 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 (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 ⁵⁾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8) 양 당사국은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 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 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 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자료: 한·캐나다 FTA 국문 정본; 한·미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카. 한·중 FTA

한 · 중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7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되어 있다. 한 · 중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조항 명칭과 문언,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한 · 미 FT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 미 FTA에서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조항의 명칭이 한 · 미 FTA와 같은 '예외'가 아니라 한 · EU FTA와 유사한 '건전성 예외'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한 · 중 FTA 건전성 예외 조항은 시작되는 문언도 좁은 의미의 예외임을 나타내는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에도 불구하고'이다. 또한 한 · 중 FTA 금융서비스 규정에는 '건전성 예외' 이외에 예외 또는 구체적 예외라는 조항이 없다. 반면 한 · EU FTA에는 '건전성 조치 예외' 외에 '구체적 예외'도 금융서비스 규정 내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 · 미 FTA와 같은 예외 조항인 것이다.

2 3 12 32	2 11.01 12.02
제7장(금융서비스) 제9.5조(건전성 예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12장(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 (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표 3-12. 한·중과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미 FTA 국문 정본

자료: 한·중 FTA 국문 정본; 한·미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

한 · 중 FTA 국문 정본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타. 한·베트남 FTA

한 · 베트남 FTA에서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부속된 금융서비스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한 · 베트남 FTA 건전성 조치 조항은 예외임을 명확히 한 문언만 한 · 미 FTA에 유사하고, 나머지 조항 명칭, 항의 구성, 건전성 사유의 범위에서 한 · EU FT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한 · EU FTA 및 한 · 미 FTA에서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3-13. 한·베트남과 한·EU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베트남 FTA 국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제8장(서비스무역) 부속서 8-가(금융서비스)	제7장(금융서비스)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2. 건전성 조치 예외, ⁷⁾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이 되는 인의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 성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유출방지를 포함 한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³⁾ 것을 포함 하여, 건전성 사유 ⁹⁾ 로 다음을 조건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³⁷⁾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1)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 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상의 당사 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서비스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의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표 3-13. 계속

한 · 베트남 FTA 국문 정본	한 · EU FTA 국문 정본
제8장(서비스무역) 부속서 8-가(금융서비스)	제7장(금융서비스)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 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 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7)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 감독당국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 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하여진다.	-
9)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 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 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37)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 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주: 한·베트남 FTA에서 각주8은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자료: 한·베트남 FTA 국문 정본; 한·EU FTA 국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TPP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그 문언은 물론 예외 조항 안에 규정한 형식까지 한 \cdot 미 FTA와 동일하다. 각주를 통해 건전성 사유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까지 동일하다. 다만 TPP의 각주에는 한 \cdot 미 FTA에는 없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즉 'as well as the safety, and financial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라는 문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130이를 번역해 보면,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

상의 완전성'이 된다. 결국 지급 및 청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 한 · 미 FTA에는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4. 한·미 FTA와 TPP의 건전성 사유 예시 비교		
한 · 미 FTA 국문 정본	TPP 협정 국문 번역본	
제13장(금융서비스) 제13.10조(예외)	CHAPTER 11: FINANCIAL SERVICES Article 11.11: Exceptions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 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0) "건전성 사유"란 지급 및 청산시스템의 재정 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 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 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 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주: TPP의 국문 번역본은 저자가 번역한 것임.

자료: 한 \cdot 미 FTA 국문 정본; TPP 협정 국문 번역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지급 및 청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건전성 사유로서 해당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건전성 사유로 반드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나 주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에 건전성 조항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그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 미 FTA를 개정하게 되는 경우 TPP의 예와 같이 지급 및 청산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나. CETA

CETA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조항은 그 규정 형식이 한 \cdot EU FTA보다 오히려한 \cdot 미 FTA에 더 유사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한 \cdot EU FTA의 비교가 아닌 한 \cdot 미 FTA와의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CETA가 한 \cdot 미 FTA와 중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곳으로, 건전성 사

¹³⁰⁾ TPP 제11.11조(예외) 제1항의 각주 10.

유를 위한 조치에 대한 '합리성' 요구, 그리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이 그것이다. CETA 규정의 제1항 (b)호의 '개별 금융기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한·미 FTA나 TPP에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순 누락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중대한 차이는 아니라고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CETA가 한·미 FTA와 중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검토하면다음과 같다.

먼저 CETA가 건전성 사유를 위한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한 것이 주목된다. 조치와 건전성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인지, 아니면 그러한 인과관계와 기여의 측면이 아니라다른 사정을 고려한 조치의 합리성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한 · EU FTA에 있었던 필요성 요건이삭제되고 합리성이 규정된 것을 보면 EU의 입장은 건전성 사유와 조치 사이의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 자체의합리성, 즉 건전성 사유 이외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는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한 · EU FTA에서의 필요성보다는 금융당국의 조치 권한에 대해 약한 제한을든 것이기는 하지만,합리성 요건이 없는 한 · 미 FTA 또는 TPP보다는 제한이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CETA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명시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다. 한 \cdot EU FTA의 예와 같기 때문에, EU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CETA에서는 의무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소극적 요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 · 미 FTA와 TPP에는 출현하는 문언인데 삭제된 것으로 보아 캐나다가 이 요건을 고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소극적 요건은 악용 금지가 그 내용이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표 3-15. 한·미 FTA와 CETA 협정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한 · 미 FTA 영문 정본	CETA 영문 정본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 ARTICLE 13.10: EXCEPTIONS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 Article 13.16: Prudential carve-out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Eleven(Investment), Fourteen(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pecifically Article 14.23(Relation to Other Chapters), or Fifteen(Electronic Commerce), and, in addition, Article 12.1.3 (Scope and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5) including for	This Agreement does not prevent a Part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reasonable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a)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nancial institution,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wes a fiduciary duty:
5)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b)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c) ensuring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Party's financial system.
-	2. Without prejudice to other means of prudentia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a Party marequire the registration of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nd of financial instruments.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

자료: 한 \cdot 미 FTA 영문 정본; CETA 영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 이면서도 대표적인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 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들,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 · 미 FTA 유형, 한 · 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 · 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 · 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을 두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과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에서 규정한 예는한 · 인도 FTA를 들 수 있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명칭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범위가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 · 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

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 · 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 · 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 · 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멕시코 정부가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동안 멕시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은행 및예금자 지원 조치들에 대해 투자자인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가 다툰 사건이다.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서아르헨티나 정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행 중 한 곳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다.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에는 포트폴리오의 자산화 및 인수 프로그램,연체된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부의 인수, 은행의 재무상태 개선이 포함되었다.131)

나.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금융위기 동안 멕시코 페소화로 표시된 채권의 구매를 촉진하면서도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신청인 소유의 채권의 구매는 촉진하지 않음으로써 NAFTA의 수용 조항에 위반되게 행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그 결과 신청인 투자의 효용과 가치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132) 반

¹³¹⁾ ICSID(2006), para. 49.

면 멕시코 정부는 이 조치들이 NAFTA 제1410조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를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수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33)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투자가 멕시코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항변한 건전성 조치와 관련 된 쟁점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 관련 조항에 대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언급을 하였다. 134)

첫째, NAFTA 제1410조 제1항의 법적 성질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예외 조항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서 건전성 사유로 인한 조치인 경우에는 NAFTA의 다른 조항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self-judging provision)이 아니라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어(affirmative defense)할 것을 요구 한다고 보았다.135)

둘째, 중재판정부는 어떤 조치가 차별적인 효과를 초래하여 투자, 서비스 등다른 장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NAFTA 제1410조 제1항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36)

셋째,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의 예로서 자본의 충분성, 대출손실 유보요건, 현금보유 및 유동화 요건, 리스크 분산에 관한다양한 규제를 제시하였다.137)

¹³²⁾ Ibid., para. 8.

¹³³⁾ Ibid., para. 217.

¹³⁴⁾ *Ibid.*, para. 5.

¹³⁵⁾ *Ibid.*, para. 166.

¹³⁶⁾ Ibid., para. 163.

라. 시사점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 · 미 FTA 및 TPP 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NAFTA 중재판정부가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이 예외라고 본 것은 해당 조항이 시작되는 문언이나 조항의 명칭에 비추어 예견된 결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재판정부가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에 대한 판단에 재량 없이 중재판정부 앞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지 판정문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조치의 수준이 대상일 수도 있고 사유와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조치가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합리성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다루지 않았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하는 분쟁해결제도의소극적 성격 때문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¹³⁷⁾ Ibid., para. 168.

표 4-1. NAFTA와 한·미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비교

NAFTA 협정문 영문 정본	한 · 미 FTA 영문 정본
Chapter Fourteen Financial Services Article 1410: Exceptions	CHAPTER 13(FINANCIAL SERVICES) ARTICLE 13.10(EXCEPTIONS)
Nothing in this Par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reasonable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or Chapter Eleven(Investment), Fourteen(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pecifically Article 14.23(Relation to Other Chapters), or Fifteen(Electronic Commerce), and, in addition, Article 12.1.3 (Scope and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by a covered investment,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5)
such as: (a)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policyholders, policy-claimant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provider;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b)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 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5)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prudential reasons" includes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c) ensuring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a Party's financial system.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such provisions.

자료: NAFTA 협정문 영문 정본; 한 \cdot 미 FTA 영문 정본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비협조국으로부터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취한 8건의 금융, 과세, 외환, 등록 조치에 관한 분쟁이다. 제소국(Complainant)은 파나마이고, 피소국(Respondent)은 아르헨티나이다. 파나마가 2012년 12월 12일 협의를 요청하여 패널 보고서가 2015년 9월 30일 회람되었다.

본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조치는 두 가지로, 이른바 제5번과 제6번 조치이다. 먼저 제5번 조치는 재보험 서비스에 관한 요건을 부과한 조치이다. 두 가지 요건이 부과되었는데, (i) 비협조국에 소재한 기업의 지점으로부터의 재보험 서비스의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의 공급 금지 (ii) 비협조국이 원산지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보험의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의 설립 금지가 그것이다. 138) 다음으로 제6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요건을 부과한 조치이다. 시행령 589/2013에 따른 협조국 리스트에 기재된 국가에속한 자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국가들을 협조국과 비협조국으로 구분하여 이들 국가로 부터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다르게 대우하였다. 비협조국은 시행령 589/ 2013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이며, 조세 투명성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 국가이 다. 시행령 589/2013 제1조는 아르헨티나와 조세정보 교환 또는 이중과세 방 지를 위한 협약에 동의한 국가들을 협조적 국가들로 정의하면서, 협약이 취소 되거나 교환되는 조세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조국의 지위를 취소할

¹³⁸⁾ WTO(2015), para. 2.3.6.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 589/2013 제2조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Federal Public Revenue Administration)이 조세 투명성에 협조적인 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권한을 부여한다.139)

글상자 4-1. 아르헨티나의 조치 내용

1. 제5번 조치: 재보험 서비스에 관한 요건140)

제5번 조치는 비협조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르헨티나의 재보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특정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는 보험관리청(the National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결정 제35.615/2011호의 부속서 1 제18호 및 제20호 (f)목에 따라 적용된다.

보험관리청 결정 제35.615/2011호는 비협조국에 소재한 기업의 지사에 의한 재보험 서비스 공급을 금지(부속서 1 제18호)하고, 비협조국을 원산지로 하여 그 비협조국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전하는 재보험 설립을 금지한다(부속서 1 제20호 (f)목). 그러나 보험관리청 결정 제35.615/2011호의 부속서 1 제19호는 재보험 운용이 그 규모나 리스크의 특성에 비추어 국내 재보험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재보험 설립체의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재보험 설립체와의 재보험 계약을 보험관리청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4년 3월 25일, 아르헨티나는 보험관리청의 기존 결정인 제35.615/2011호의 부속서 1 제 18호 및 제20호 (f)목을 대체하는 보험관리청 결정 제38.284/2014호를 공표하였다. 신규 결정의 제18호 및 제20호 (f)목은 비협조국의 주체(entities)들에 대한 국경간 무역 및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재보험 서비스의 공급의 금지를 철폐하였다. 신규 결정은 비협조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모회사 그리고 비협조국으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보험 주체들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3월 25일의 개정에 따라, 보험관리청의 기존 결정인 제35.615/2011호의 부속서 1 제 18호 및 제20호 (f)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외국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본 국으로부터 재보험의 운용을 공급하는 것을 또는 아르헨티나 내의 지사를 통해 재보험의 운용을 공급하는 것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1) 외국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이 협조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되었음을 증명할 것(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증명은 모회사에 대해 적용됨)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대해 FATF의 정의에 따라 협조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설립되고 등록되었음을 증명할 것(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증명은 모회사에 대해 적용됨).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모드 1 또는 모드 3을 통해 운용되는 외국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이 협조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제18호 및 제20호 (f)목은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가 1) 자신이 바로 보험관리청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그리고 2) 그 조직과의 사이에 협력 및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¹³⁹⁾ *Ibid.*, para. 2.3.7.

¹⁴⁰⁾ WTO(2016), paras. 5.17-5.21

2. 제6번 조치: 아르헨티나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 요건141)

제6번 조치는 주식시장 중개인(intermediaries)이 비협조국의 인에 의해 주문된 거래에 관여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이 조치는 국가증권위원회규정 제9편(title)(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제3절(section) 제5조에 따라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협조국에서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는 인으로부터 주문된 옵션, 기타 금융상품 등의 거래에 관여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내의 주식시장 중개인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비협조국에서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는 주문자인 인은 아르헨티나 보험관리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 및 감독 기관에 등록된 중개인의 지위를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아르헨티나 보험관리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 및 감독 기관은 아르헨티나 보험관리청과 협력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어야 한다. 협조국의 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래에 관여한 아르헨티나의 주식시장 중개인은 이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파나마의 패널 절차에서의 주장

제소국인 파나마는 아르헨티나가 취한 8개의 조치들이 GATS 제2조(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제5번과 제6번 조치에 대해서 파나마는 각각 재보험 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제5번 조치) 그리고 자본시장 접근과 관련하여(제6번 조치), 협조국의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비협조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였음을 이유로 GATS 제2조(최혜국 대우) 위반을 주장했다. 142)

또한 파나마는 제5번 조치에 대해서 GATS 제2조(최혜국 대우) 위반 외에도 아르헨티나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고 그들에게 서비스 스케줄에 기재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기 때문에 GATS 제16조(시장접근)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a)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43)

참고로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제1, 2, 3, 4, 7, 8번 조치에

¹⁴¹⁾ *Ibid.*, para. 5.22

¹⁴²⁾ *Ibid.*, para. 3.1. e(i) and f.

¹⁴³⁾ Ibid., para. 3.1. e(ii).

대해서 파나마는 각각의 조치에 따라 어떤 조치는 GATS 제2조(최혜국 대우) 또는 GATS 제17조(내국민 대우)에, 또는 어떤 조치는 이 두 조항 모두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44

2) 아르헨티나의 패널 절차에서의 항변

피제소국이자 조치국인 아르헨티나는 제5번과 제6번 조치가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따른 재보험사의 파산으로 보험사가 위험에 빠져 결국 금융소비 자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145) 그러나 패널은 취해진 조치와 건전성 사유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건전성 조치를 "위해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파나마의 상소심 절차에서의 주장

파나마는 패널이 GATS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조 (a)항이 "부속서 제1조 가호의 의미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의 조치에 적용된다"고 판정한 것을 상소심 절차에서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6) 즉 파나마는 패널이 사안에서 해석적 쟁점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했다. 파나마는 특히 패널이 부속서 제2조 (a)항의 제목이 갖는 의미는 분석하지 않은 채 건전성의 예외가 GATS 제6조의 의미 내에서의 '국내규제'를 구성하는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릇되게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파나마는 부속서 제2조 (a)항의 도입구인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널이 건전성의 예외가 적용되는 조치의 유형과 건전성을 사유로위반될 수 있는 GATS의 조항들을 혼동하였다고 주장했다. 파나마는 패널이

¹⁴⁴⁾ *Ibid.*, para. 3.1. a-d and g-h.

¹⁴⁵⁾ *Ibid.*, para. 7.816.

¹⁴⁶⁾ Ibid., para. 6.242.

파나마의 해석에 의해 건전성의 예외가 해당 조항의 위반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GATS 제6조에 관한 파나마의 입장을 오해하였다고 덧붙 인다. 파나마는 건전성 조치가 '국내 규제'로서 취해지는 한, 건전성의 예외가 GATS 조항들과의 불일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자신의 해석을 재차 강조했다. 147)

4) 아르헨티나의 상소심 절차에서의 항변

반면 아르헨티나는 파나마의 주장이 제5번 및 제6번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GATS 제6조가 정한 국내 규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상소심 절차에서 항변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파나마의 주장이 이 분쟁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르헨티나는 건전성 예외라는 명칭이 조치의 유형을 망라적으로(exhaustively) 정의한다는 파나마의 입장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르헨티나의 관점에서 부속서 제2조 (a) 항의 문언은, GATS의 초안자들이 건전성 사유 이외의 예외가 적용되는 조치의 유형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148)

아르헨티나는 나아가 GATS 제16조에 의한 시장접근의 반대로서 '국내규제'를 정의하려는 파나마의 시도는 문언에 반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파나마의 해석대로라면 예외의 범위로부터 예컨대 GATS 제16조 제2항 (e)호에 속하는 시정접근 제한이 배제될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파나마가 건전성 조치의 예외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신중하게 교섭된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부적절하게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149)

¹⁴⁷⁾ Ibid., para. 6.248.

¹⁴⁸⁾ *Ibid.*, para. 6.249.

¹⁴⁹⁾ Ibid., para. 6.250.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1) 건전성 조치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패널의 판단

패널은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 GATS 금융부속서 제2조 (a)호의 성격을 '예외'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해당 조항의 문언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로 시작된 점, 서비스무역이사회(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가 2001년 3월 23일에 채택한 GATS 양허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도 건전성 조치를 예외 항에 기재하도록 한 점, 사무국이 GATS 양허스케줄 작성 방법에 대해 작성한 설명서(Explanatory Note)에서도 건전성 조치를 예외 항에 기재하도록 한 점을 들었다.150)

패널은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 GATS 금융부속서 제2조 (a)호의 성격이 '예외'이기 때문에, 조치국인 아르헨티나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제5번과 제6번 조치가 건전성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르헨티나가 입증하여야 하며 진위불명 상태에 놓일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아르헨티나가 패소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151)

2) 건전성 조치의 요건

패널은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 GATS 금융부속서 제2조 (a)호는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i)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 (ii) 조치가 건전성 사유를 위해서 취해질 것 (iii) GATS 의무나 양허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그것이다. 152)

¹⁵⁰⁾ Ibid., paras. 7.813-7.815.

¹⁵¹⁾ Ibid., para. 7.816.

¹⁵²⁾ Ibid., paras. 7.821-7.822.

3) 제5번 조치에 대한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5번 조치(재보험 서비스에 관한 요건)가 건전성 사유를 '위해서 (for)'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위해서'의 사전적 의미는 조치와 목적 사이의 합리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나아가 조치와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조치의 양태, 설계 및 외형상 구조(design, architecture, and revealing structure)'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도 아르헨티나의 주장대로 예방조치의핵심은 보험감독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패널은 공식적으로 협조관계에 있지만,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보험감독기관에게 아르헨티나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아르헨티나가취한 건전성 조치의 합리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즉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단지 정보교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조국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협상의 시작만으로는 아르헨티나가 협상 당사국의 보험감독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와 목적 사이의 합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153)

4) 제6번 조치에 대한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6번 조치(아르헨티나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요건 부과 조치)도 건전성 사유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르헨티나 증권거래 위원회 규정 제5조(Title XI, Section III, Article 5 of the CNV Rules)는 비협 조국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가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유가증권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i) 아르헨티나의 증권거래위원회(CNV: the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조직에 등록될 것 (ii) 위의 조직이 아르헨티나 증권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패

¹⁵³⁾ Ibid., paras. 7.912-7.920.

널은 아르헨티나의 제6번 조치가 건전성 보호라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i)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유가증권의 공모에 참여 하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 (ii) 그가 속한 국가의 금융 감독 조직이 아르헨티나 의 CNV와 MOU를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 한다. 패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제6번 조치는 시행령 589/2013 에서 정한 협조국과 비협조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기준은 앞서 제5번 조치와 같은 문제점, 즉 정보 요청 없이 협상 개시국에 대해서도 협력국의 지위 를 부여한 것 때문에 제6번 조치와의 합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154)

5)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의 범위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파나마의 상소가 위에서 식별된 최소한의 기준(threshold)에 한 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155) 파나마의 상소는 어떤 유형의 조치가 잠재적으로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파나마의 상소는 제2조 가호의 다른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나머지 요건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다.156)

글상자 4-2.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 번역본

2. 국내 규제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¹⁵⁴⁾ Ibid., paras. 7.939-7.949.

¹⁵⁵⁾ WTO(2016), para. 6.246.

¹⁵⁶⁾ Ibid., para. 6.251.

상소기구는 '조치'라는 단어가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에서 두 개의 문장에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견상 두 문장 중 어느 것도 제2조 가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조치를 식별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소기 구는 금융서비스부속서 제1조 가호가 이 부속서에서 모든 조항의 범위를 설정 하며, 그 결과 해당 조항은 제2조 가호가 적용될 조치의 범위를 설정할 때 도움 을 준다고 언급했다. 제1조 가호는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제1조 가호에서 '금융서비스의 공 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는 문언이 사용된 점은 제2조 가호가 해당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치의 유형에 특정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 한다고 보았다.157)

제2조 가호 첫 문장의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도입절 또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다. 사전적 정의에 기초하면 '불구하고(notwithstanding)'의 통상적 의미는 '고려 없이, 방해받지 않고(in spite of, without regard to or prevention by)'이다. 이것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가 제2조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제2조 가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가호 첫 문장의 도입절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제2조 가호의 두 번째 문장에 의해 확인된다. 특히 두 번째 문장은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협정의 규정'에 대한 언급은 이 문장이 GATS의 다른 조항과의 불합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158)

제2조 가호가 'GATS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불합치'를 다룬다는 사실은 이 조항이 회원국의 GATS 의무 불합치를 정당화하는 데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의무들은 제2조의 최혜국 대우 의무,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¹⁵⁷⁾ Ibid., para. 6.253.

¹⁵⁸⁾ *Ibid.*, para. 6.254.

의무를 포함한다. 예컨대, 이것은 건전성 사유를 위해 시장접근 제한을 부과한 제16조 제2항에 열거된 유형의 조치들이 잠재적으로 제2조 가호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회원국에 의해 취해진 시장접근 제한과 같은 조치의 유형과 제16조와 같은 조치에 의해 위반된 GATS의 조항은 구별되지만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2조 가호의 도입절에 의해 부여된 GATS의어떤 조항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탈 허용이 "GATS의 조항과 불일치할 수 있는 그리고 건전성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조치의 유형'에 관해 아무런 함의가 없다"는 파나마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동의하지 않는다. 159)

이러한 측면에서 상소기구는 또한 파나마가 "국내규제는 GATS 제6조에 의해 우선적으로(predominantly) 다루어지는 반면, 시장접근 제한은 GATS 제16조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주장한 사실 그리고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또는 '국내규제'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했다. 파나마에 따르면 "건전성 사유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들은 '국내규제'의 형태로 취해 져야만 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파나마의 이러한 해석은 제2조 가호의 범위로 부터 시장접근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제2조 가호가 제16조와의 불합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effectively) 의미하며, 이러한 제외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된 제2조 가호의 도입절과 배치된다고 보았다.160)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조 가호의 제목인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해당 명칭이 제2조 문언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상소기구는 명칭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제2조 가호의 적절한 해석과 합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소기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의 다른 사례들에 상소기구가 조항의 명칭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도 그리고 GATS 그 자체에도 '국내규제'의 정의는 없다. 161)

¹⁵⁹⁾ Ibid., para. 6.255.

¹⁶⁰⁾ Ibid., para. 6.2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는 '국내규제'가 제목인 GATS 제6조의 문맥은 제2조 가호의 명칭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6조는 다양한 조치들을 언급한다. 제1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제2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제3항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요구되는' '승인'을, 제4항과 제5항 가호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을, 제6항은 '다른 회원국의 전문 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각각 규정한다. 상소기구는 제6조가 적용될 조치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은 제6조의 제목인 '국내규제'역시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항에 포함될 조치의 유형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유사하게, 상소기구는 제2조 가호의 제목도 제6조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162)

추가적으로 GATS에 대한 부속서로서 금융서비스부속서는 GATS 제29조에 따라 '(GATS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 결과 GATS 제28조의 정의 역시 부속서의 해석에 유용한 맥락을 제공한다. 특히 제28조 가호에 따르면 '조치'는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모든 형태의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모든 형태'와 '모든 조치'에서 사용된 '모든'이라는 단어는 GATS 제28조가 금융서비스부속서를 포함하여 GATS에 의해취해질 수 있는 어떤 조치의 유형이나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제1조 가호와 제28조 가호에서 '조치'의 범위가 정의의 측면에서해석된다면,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의 문언은 제2조 가호에 따라 포섭될 '조치'의 유형이나 형태에 대한 제한을 나타내지 않는다. 163)

GATS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 상소기구는 GATS 전문 제3항과 제4항 모두

¹⁶¹⁾ *Ibid.*, para. 6.257.

¹⁶²⁾ *Ibid.*, para. 6.258.

¹⁶³⁾ Ibid., para. 6.259.

'국가정책목표'를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 제3항은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 사이의 전반적인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에 대한 희망을 언급한다. 전문 제4항은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전문에 언급된 '국가정책목표'는 해당 조치가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건전성 사유를 위하여' 취해지며,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추구될 수 있다. 제2조 가호에 잠재적으로 포섭될 조치의 유형을 제한하는 해석은 GATS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의무 사이의 전반적인 균형과 합치되지 않을 것이다. 164)

상소기구는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조 가호의 범위 대 한 패널의 판단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판정했다. 165)

라. 시사점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이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 조항이 국내규제와 관련된 조치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등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FTA 규정이 그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일치하는 범위까지 상당 부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¹⁶⁴⁾ *Ibid.*, para. 6.260.

¹⁶⁵⁾ Ibid., para. 7.1. d.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다른 분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 컨대 한 · 미 FTA의 경우,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 (incorporated)되는 한도에서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그 결과 금융서비스 에 관한 장에는 ISDS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에 관한 장에 규정된 ISDS 가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이 취한 조치로 손해를 입는 경우 ISD의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CETA에서는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는 것은 물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규제에 관한 장도 통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제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 · 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 이 사라지고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 하는 문구 추가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즉 한 · 미 FTA, 한 · EU FTA, 그리고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를 따른 유형 중 하나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관련해서는 WTO에서 판정이 내려졌고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과 유사한 문언으로 건전성조치 조항을 규정한 FTA들, 예컨대 한 · 인도, 한 · ASEAN FTA 등의 경우에는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WTO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우리나라와 FTA 당사국 사이에 발생하였을 때, 양자의 문언이 비슷한 경우이므로 WTO 판정례가 중요한 참고는 되겠지만 WTO 분쟁과 FTA 분쟁에서의 준거법이 엄연히 다르고 당사국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WTO 분쟁에서는 건전성 조치 조항이 국내규제에 관한 조항 안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성 조치를 국내규제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접근에 관련된 조치에도 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상소기구와 패널은 해당 조항의 제목이 국내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규제조치 이외에 시장접근에 관한 조치,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명확히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상대국이 WTO 판정의 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WTO 판정이 있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비를 방지하려면 FTA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한 · 미 FTA는 NAFTA와 유사한 면이 많고 NAFTA 분쟁사례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건전성 조치를 다룬 사건이 있었다. 비록 사안에서는 해당 조치가 수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성 항변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판정의 가치가 앞서 WTO 판정례만큼 높지는 않겠지만,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체결 시기별로 그리고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한 · 미 FTA의 경우 투자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incorporated)되는 한도에서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투자에 관한 장에 규정된 ISDS가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한 · EU FTA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 16일 EU가 ISDS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상설적인 투자법원 설립을 제안을 발표한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있을 한 · EU FTA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EU의 제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 이후 EU 및 EU의 협상 상대국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한 · 미 FTA에는 금융서비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 · 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정보의 취급에 관한 조항에서도 앞서 정의 조항과 유사하게 FTA 별로 포함되는 유형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한 · 미 FTA와 한 · 중 FTA는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였으나 한 · EFTA FTA에서는 개인 금융고객의 거래 및 계정 정보라는 유형 없이 다른 두 가지 유형만 예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같은 유형에 대한 규정이라도 FTA 별로 조금씩 그 문언이 달라 범위나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일정 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 · 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 · 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이 기준인지, 즉 실질적인 비밀성이 없는 단지 형식적인 비밀표지만 갖춘 서류여도 비밀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FTA 중에서 동일한 영문 정본에 대해 서로 상이한 국문 정본이 규정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건전성 조치 조항 내에 규정된 한 가지 요건인 비밀정보의 공개 금지에 관한 항이 그것이다. 이 항을 포함하는 FTA 중에서 한 · 인도 FTA와 나머지 FTA인 한 · ASEAN, 한 · EU FTA가 서로 다르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번역 과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법적 효과, 즉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당장 현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cdot 인도 FTA 국문 정본이 오류가 아니라면 나머지 한 \cdot ASEAN, 한 \cdot EU FTA 국문 정본이 오류이거나, 아니면 반대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펼치면서 FTA 후발 주자에서 단숨에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이른바 높은 수준의 FTA를 성사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없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발견된 오류는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한 · 미는 물론 한 · EU FTA 등 각종 개정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체결한 우리나라의 FTA 협정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FTA 국문 정본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정본'으로, 번역본과는 구별된다. 영문 정본과 자국어 정본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는 분쟁사례가 없지 않다. 166) 우리나라 스스로 국문 정본을 홀대하여 오류를 방치한다면 중재판 정부는 국문 정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영문 정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뼈아픈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통상이 담당분야가 아닌 일선의 행정담당자나 정책결정자들도 국문 정본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므로 국문 정본에 대한 정비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¹⁶⁶⁾ 터키 건설회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준거법은 터키-투르크메니스탄 BIT였는데, 영문정본에는 'if'가 있으나 러시아어 정본에는 삭제되어 있어 해석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다. ICSID(2015), para. 75.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협정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협상 상대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국의 표준 협정문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협상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국의 표준 협정문이 존재하는 경우 이로부터의 현저한 이탈은 국내 사정상 곤란함이 크다는 항변이 협상 과정에서 그 국가의 협상력을 일정 부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협상의 상대국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식별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BIT의 표준 협정문을 이른바 모델 협정(Model Treaty)이라는 명칭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꾸준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 167) 몰론 FTA가 아닌 BIT에 관한 것이지만, 모델 협정에서의 문안은 FTA에서도 동일하게 상용된다. 예컨대 투자의 정의와 관련해서, '위험의 인수(the assumption of risk)'가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미국은 모델 협정의 투자의 정의 부분에서 이 요건을 '또는(or)'으로 연결함으로써 필수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2004년 본에 등장하여 2012년 본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2007년에 서명된 한・미 FTA에도 위험의 부담이 투자의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이 2012년에 개정한 모델 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면, 비록 수정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관련한 개정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협상의 상대국은 알 수 있다. 특정 협상 상대국에 대한투수성을 고려하여 자국의 모델 협정의 문언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¹⁶⁷⁾ USTR(2017c), p. 1.

우리나라도 사실상 한 · 미 FTA와 한 · EU FTA 협정문이 각각 북미 및 중남 미,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표준 문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WTO 협정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협상 상대국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아우르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철학과 이익이 반영된 문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문언이 명확하며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향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나라의 표준 문안이 FTA 후발 국가들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그 국가들이 널리 사용한다면 이것은 의미도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고학수 편저. 2015. 『핀테크 시대』. 박영사.

법무부. 2000. 『GATS 해설서』. 문중.

____. 2010.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 성진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 「(참고자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참고자료. (11월 5일)

외교통상부. 2012.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이재민. 2016.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통상법률』, 제132호. 법무부. (12월) 정민정. 2011.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채은선. 2012. 「GATS상 금융 건전성 조치의 기준」. 『강원법학』, 제35권. (2월) 한철수. 1994.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영문 자료]

- ICSID. 2006.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The United Mexican States(FFIC v Mexico), (ICSID Case No. ARB(AF)/02/01), Award. (July 17)
- _____. 2015. Kılıç İnşaat İthalat İhracat Sanayi v Ticaret Anonim Şirketi, (ICSID Case No. ARB/10/1), Award. (July 14)
- Mitchell, Andrew D. Jennifer K. Hawkins, and Neha Mishra. 2016. "Dear Prudence: Allowance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for Prudential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9.

Munin, Nellie. 2010. Legal Guide to GATS. Wolters Kluwer.

Schott, Jeffrey J. 2016. "Overview: Understanding the Trans-Pacific

- Partnership." Cimino-Isaacs, Cathleen and Jeffrey J. Schott eds. *Trans-Pacific Partnership: An Assessments*.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104.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TO. 2000.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R & WT/DS142/R. (February 11)
 ______. 2005.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Cor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DS285/
- _____. 2015. "Panel Report, Argentina 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S453/R. (September 30)
- _____. 2016.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 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es." DS453/AB/R. (April 14)
- Zacharias Diana. 2008. "Article I GATS." Rüdiger Wolfrum, Peter-Tobias Stoll and Clemens Feinäugle e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WTO Trade in Services*.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협정문 및 법령]

AB/R. (April 7)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0호, 2016. 3. 29. 일부 개정).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 =1&nwYn=1§ion=&tabNo=&query=%EA%B8%88%EC%9C%B5%EC%82%B0%EC%97%85%EC%9D%98%20%EA%B5%AC%EC%A1%B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검색일: 2017. 6. 14).
-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국문 번역본」. http://www.mofa.go.kr(검색일: 2017. 6. 18).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3. 6. 25. 금융위원회 고시제2013-17호, 2013. 6. 25. 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 do?chrClsCd=010202&admRulSeq=2000000095143(검색일: 2017. 8. 15).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7호, 2015. 7. 22. 일부 개정). http://www.law.go.kr/admRulSc.

- do?menuId=1&query=%EA%B8%88%EC%9C%B5%ED%9A%8C%EC %82%AC%EC%9D%98%20%EC%A0%95%EB%B3%B4%EC%B2%98%E
- B%A6%AC%20%EB%B0%8F%20%EC%A0%84%EC%82%B0%EC%84%
- A4%EB%B9%84%20%EC%9C%84%ED%83%81%EC%97%90%20%EA %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검
-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국문 번역본」. http://www.

색일: 2017. 8. 15).

mofa.go.kr(검색일: 2017. 6. 18).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국문 번역본」.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 &tabmenu=t 2(검색일: 2017. 8. 17).
- 「한·칠레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l/ 2/(검색일: 2017. 6. 14).
-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sg/2/(검색일: 2017. 6. 14).
- 「한·EFTA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efta/2/(검색일: 2017. 6. 14).
- 「한·ASEAN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검색일: 2017. 6. 14).
- 「한·인도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검색일: 2017. 6. 14).
- 「한·EU FTA 협정문」. http://www.fta.go.kr/eu/doc/1/(검색일: 2017. 6. 14).
- 「한·페루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pe/(검색일: 2017. 6. 14).
-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7. 6. 14).
- 「한·터키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tr/(검색일: 2017. 6. 14).
- 「한·호주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검색일: 2017. 6. 14).
- 「한·캐나다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검색일: 2017. 6. 14).
- 「한·중 FTA 협정문」. http://www.fta.go.kr/cn/(검색일: 2017. 6. 14).
-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nz/1/1/(검색일: 2017. 6. 14).

- 「한·베트남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vn/2/(검색일: 2017. 6. 14).
-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o/1/1/(검색일: 2017. 6. 14).
-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http://www.wto.org(검색일: 2017. 6. 18).
- 「Annex on Financial Services」. http://www.wto.org(검색일: 2017. 6. 18).
- 「CETA(The Comprehensive and Economic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 -commerciaux/agr-acc/ceta-aecg/text-texte/toc-tdm.aspx?lang =eng(검색일: 2017. 8. 12).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https://www.nafta-sec-alena.org/Home/Texts-of-the-Agreement/North-American-Free -Trade-Agreement(검색일: 2017. 8. 12).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 -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검색 일: 2017. 8. 12).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 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12012E%2FTXT (검색일: 2017. 6. 18).

[온라인 자료]

- 강명헌. 2017. 「리스크 커지는 금융, 정책대응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8월 2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023371(검색일: 2017. 8. 23).
- 권혁세. 2017. 「금융산업에 '메기'를 더 풀어놔야」. 『한국경제』. (8월 28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2749861(검색일: 2017. 8. 29).
- 국립국어원. 201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검색일: 2017. 6. 18).
- 「미국 무역대표부, TPP 참가국에 공식 탈퇴 통보」. 2017. 『한국경제신문』. (1월 3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1319772g?nv=o(검색일: 2017. 8. 15).
- NEW 경제용어사전. 20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3157

- &cid=42111&categoryId=42111(검색일: 2017. 8. 2).
- 「美제외 TPP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모색"」. 2017. 『연합뉴스』. (5월 2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1/0200000 000AKR20170521032451084.HTML(검색일: 2017. 7. 22).
- 「美빠진 TPP, 최소수정 후 신속발효 11월 APEC서 큰틀합의 목표」. 2017. 『연합뉴스』. (7월 1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
- 14/020000000AKR20170714085900073.HTML(검색일: 2017. 7. 22). 법제처. 2017. 법령정보종합센터. http://law.go.kr/main.html(검색일: 2017. 8. 2).
- 「美USTR 대표 "TPP 탈퇴번복 없다··· 아태국가와 FTA 원해"」. 2017. 『이데일리』. (5월 21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
 - &newsid=01951606615931216&DCD=A00802&OutLnkChk=Y(검색일: 2017, 8, 15).
- 「벨기에, CETA 이견조율 극적 타결… 최종서명 박차」. 2016. 『뉴스1』. (10월 27일). http://news1.kr/articles/?2814990(검색일: 2017. 7. 22).
- 「비자카드 해외사용 카드 수수료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될 듯」. 2017. 『뉴데일리』. (2월 21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2 6279(검색일: 2017. 6. 16).
- 「캐나다·EU, CETA 9월 발효 잠정 합의」. 2017. 『뉴스1』. (7월 9일). http://news1. kr/articles/?3043239(검색일: 2017. 8. 8).
- 「트럼프, 위험한 보호무역 질주… 업무 첫날 TPP탈퇴 서명」. 2017. 『매일경제』. (1월 25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58016&year=2017 (검색일: 2017. 8. 15).
- 「트럼프 탈퇴 후 TPP 가입국 "협정 무의미… 각자도생"」. 2017. 『경향비즈』. (2월 7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71107011&code=920100(검색일: 2017. 8. 8).
- 「트럼프 'TPP 탈퇴' 서명 "앞으론 1대1 직접 협상할 것"」. 2017. 『한겨레』. (1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79980.html (검색일: 2017. 7. 22).
- 채수환. 2017. 「'일자리 모범생' 금융, 홀대론이 웬말」. 『매일경제』. (6월 12일).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392608(검색일: 2017. 6. 14).
- "Australia Meeting Could Test Support for Pacific-Trade Pact." 2017.

 Bloomberg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August 11). http://news.bna.com/tdln/TDLNWB/split_display.adp?fedfid=118401738&vn

- ame=itdbulallissues&wsn=499841500&searchid=30342653&docty peid=1&type=date&mode=doc&split=0&scm=TDLNWB&pg=0(검색일: 2017. 8. 14).
- "EU's Call to U.S. to Restart Talks on Services Goes Unanswered." 2017. Bloomberg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June 1). http://news.bna.com/tdln/TDLNWB/split_display.adp?fedfid=113106355&vname=it dbulallissues&wsn=500578000&searchid=30342707&doctypeid=1&type=date&mode=doc&split=0&scm=TDLNWB&pg=0(검색일: 2017. 8. 14).
- European Commission. 2016. "EU-Canada summit: newly signed trade agreement sets high standards for global trade." (October 30).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569(검색 일: 2017. 8. 8).
- European Commission. 2017a. "European Commission welcomes Parliament's support of trade deal with Canada." (February 15).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624(검색 일: 2017. 8. 8).
- _____. 2017b. "In focus.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September 22).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ceta/(검색일: 2017. 8. 8).
- 메리암-웹스터(Merriam-Webster) 온라인 사전. 2017.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검색일: 2017. 6. 18).
- 「TPP 각료회의, 호주 "美빼고" 일본 "복귀시키자" 이견」. 2017. 『연합뉴스』. (3월 1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 AKR20170316059500009.HTML(검색일: 2017. 7. 22).
- 「TPP협상 "역사적 타결"… 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다」. 2015. 『연합뉴스』. (10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5/0200000000 AKR20151005002853071.HTML?input=1195m(검색일: 2017. 7. 27).
- USTR. 2017a.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 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7/2017-national-trade-estimate(검색일: 2017. 6. 18).
- _____. 2017b.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July 17).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

NAFTAObjectives.pdf(검색일: 2017. 7. 24).
_____. 2017c.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July 17).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CIEP%
20Meeting.pdf(검색일: 2017. 8. 30).

Executive Summary

Study o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and Negotiation Trends of Free Trade Agreement (FTA): Focused on the Provision of Prudential Measures

EOM Jun-Hyun

This study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velope its FTA policy, by reviewing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compare them with other major countries' so-called 'Best' FTAs.

In the second chapter, the study overviews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and major countries' FTAs.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of Korea's FTAs indicate significant devi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definition and scope,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signing and the other Party. On the other hands, those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re also reviewed, with some changes identified, which were not found in Korea's FTAs. It is evaluated that these parts needs to be further scrutinized for Korea's amendment negotiations with countries which are parties of those FTAs. In the TPP, the Article 11.17 on the performance of back-office functions mentions on avoiding the imposition of arbitrary requirements. In the CETA, the defini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learly regards a branch as a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third chapter, the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n prudential measures of Korea's and major countries' FTAs. In Korea's FTAs. those provis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Kor-US FTA type, Kor-EU

FTA type, and GATS type. In the TPP, the term of prudential reasons newly added the phrase of "as well as the safety, and financial and operational integr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to the existing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or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The CETA also newly added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n the fourth chapter, the study reviewed relevant dispute settlement cases. In the NAFTA case of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United Mexican States*, the tribunal viewed that the article 1410(1) of the NAFTA is not a self-judging provision but requires a State-Party to establish an affirmative defense. In the WTO case of Argentina Financial Services,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Panel did not err in finding, that "paragraph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covers all types of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a)" of the Annex. It means that although the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stipulates prudential measures under the title of domestic regulations, the prudential measure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regulations but they can be measures relating to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or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As a conclusion, from these findings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o develope its FTA policy.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oom for the financial authority to take prudential measures might be narrowed by incorporating the investment chapters and its articles on investor–state disputes system (ISDS), and the domestic regulation chapters without limiting the extent incorporated. Such attempts are observed in the CETA. Other newly added parts in the TPP and the CETA identified in this study need to be further scrutinized for Korea's amendment negotiates with the countries which are the parties to those FTAs. Second, Korea should review the financial service regulations of its FTAs to make some necessary amendments. Particularly, it will be good if the lessons of the WTO case are reflected into Korea's FTAs.

★★●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Bo-Young and LEE Seo Young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 김상겸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 김종덕·최보영·조문희·정민철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임수호·김준영·박종상·안국산·박일봉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과 시사점 / 오윤아·신민이·김미림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Prospect of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 LEE Hye Min and YANG Hyoeun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 엄준현
■ 2016년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16-02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 곽성일·이재호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손성현 · 권가원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새별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 · 강부균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김준영·홍석기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ㆍ김준영ㆍ이보람ㆍ张慧智ㆍ朴英愛ㆍ王箫轲

-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관행 변화 분석 /

/ 임수호·최유정·홍석기

오종혁·박현정

중심으로 / 박현정·이효진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김윤옥·서현교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최호락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업준현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괴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 이정균 · 김준영 · 임소정 · 안국산 · 미무라 미쓰히로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오종혁 • 박진희 • 김홍원

■ 2015년

■ 2014년

- 김종덕 · 최보영 · 엄준현 · 정민철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엄준현(嚴畯鉉)

고려대학교 국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eom@kiep.go.kr)

저서 및 논문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공저, 2014)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 리스크와 대응방안』(공저,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C	이번베표 바가모 이제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А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ㆍ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한글)	(한문	·)	
(성명)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년	<u>·</u> 에 ✓ 표시	l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개 인 회 연구자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	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y o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and Negotiation Trends of Free Trade Agreement (FTA): Focused on the Provision of Prudential Measures

EOM Jun-Hyun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금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품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금융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 FTA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





ISBN 978-89-322-2442-8 978-89-322-2064-2(州트)

